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72
----------	------

2025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5. 26.
2. 제안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25. 5. 29.
4.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5. 6.2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5. 6.26)
 - 승인

Ⅱ. 제안설명의 요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834억원을 포함하여 13조 4,038억원임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1%인 13조 87억원으로 전년 대비 3,057억원($\Delta 2.3\%$) 감소함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1.8%인 11조 9,9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0억원(1.9%) 증가함
 - 세계잉여금은 1조 152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180억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4,667억원($\Delta 61.2\%$) 감소함

나. 세입결산

- 세입 결산액은 13조 87억원으로
예산현액 13조 4,038억원 대비 97.1%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5억원, 불납결손액은 18억원임
- 세입재원의 구성비율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4.3%,
자체수입이 1.2%, 순세제잉여금 등 기타 수입이 14.5%로,
교육청 전체 예산 중 80% 이상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음

다. 세출결산

- 세출 결산액은 11조 9,935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180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2%인 6,916억원임
- 정책 사업별 결산내역 부문별로는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5조 9,387억원,
 - 평생교육 부문이 320억원,
 - 교육일반 부문이 2,809억원
 - 예비비 159억원, 인건비 5조 7,258억원임
- 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은
 - 인건비와 전출금 등이 75.6%로 9조 694억원,
 - 이전지출은 13.0%로 1조 5,645억원,
 - 그 외 물건비, 자본지출, 상환지출, 예비비 및 기타, 내부거래에 11.3%로 1조 3,593억원을 지출하였음

○ 집행잔액의 성질별 세부내역은

- 인건비 292억원, 물건비 367억원, 이전지출 402억원,
- 자본지출 1,976억원, 상환지출 1억원, 전출금 등 1,485억원,
- 예비비 및 기타 272억원, 내부거래 2,120억원임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 4,539억원,

-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155억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4억원,
- 낙찰차액 81억원, 지출잔액 1,462억원, 예비비 및 기타 152억원임

라.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 예산 이용은 565억원으로,

교육감 보궐선거 실시로 총 1건 이용함

○ 예산 전용은 219억원으로, 교육급여지원 등으로

총 41건을 전용함

○ 예산 이체는 30억원으로, 2024.7.1.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등으로

총 2건을 이체함

마. 다음연도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액은 29개 세부사업에 7,180억원으로,

명시이월액은 583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597억원임

바. 공유재산 및 물품

○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2조 2,64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7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보유 정수물품 현재액은 7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억원이 감소함

사.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채권 총액은 2024년도 말 현재 1,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원이 감소하였음
- 채무액은 2024년도 말 현재 없음

아.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의
 - 자산은 전년 대비 5,986억원이 감소한 18조 793억원이며
 - 부채는 전년 대비 412억원이 감소한 5,069억원임
 - 순자산은 전년 대비 5,573억원이 감소한 17조 5,724억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는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유동자산 감소임
- 재정운영표의
 - 수익은 전년 대비 3,134억원 증가한 11조 5,556억원이며,
 - 비용은 전년 대비 3,618억원 증가한 12조 1,130억원으로,
 - 운영차액은 △5,573억원임
 - 재정운영결과, 비용은 전년 대비 완만히 증가(2.8%)하였고,
수익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3.1%)하였으나 적자 운영됨

자. 성과보고서

- 성과계획서는 총 86개 성과지표 중 69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전년 대비 0.6% 증가한 90.7%의 달성률을 거두었음

차. 성인지 결산서

- 성인지사업 31개의 지표 중 19개 지표의 목표가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61.3%의 달성률을 거두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이유

-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5년 5월 26일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¹⁾

- '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12조 6,203억 5,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3조 7,858억 6,200만원)보다 △8.5%, △1조 1,655억 1,000만원 감소한 것임
 - 최종예산액 12조 6,203억 5,200만원은 당초 본예산(11조 1,605억 3,600만원), 추가경정예산증액조정분(1조 2,881억 3,100만원), 간주처리분(1,716억 8,400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7,834억 8,900만원)을 합한 '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14조 3,880억 600만원)보다 △6.8%, △9,841억 6,500만원 감소한 13조 4,038억 4,100만원임

1)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심사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 차이 있음

-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13조 3,145억 1,600만원) 보다 △2.3%, △3,057억 5,700만원 감소한 **13조 87억 5,8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11조 7,664억 9,700만원) 보다 1.9%, 2,270억 1,000만원 증가한 **11조 9,935억 8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1조 5,480억 1,800만원) 보다 △34.4%, △5,327억 6,700만원 감소한 **1조 152억 5,000만원**임

〈표 2-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A-B)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2024	13,403,841	13,008,758 (97.1)	11,993,508 (89.5)	1,015,250 (7.6)	명시이월	58,306
					사고이월	659,777
	(2024최종) 12,620,352				계속비이월	-
	(2023이월) 783,489				보조금반납예정액	649
					지방채상환	-
					순세계잉여금	296,517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3.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은 재원구분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채 및 이월금 등으로 구성됨
- '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실제 수납액)은 13조 87억 5,8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13조 181억 6,500만원)과 비교하면 △94억 700만원 부족수납된 것으로, 75억 9,600만원이 미수납 되고, 18억 1,000만원이 불납결손된 것으로 제출됨

〈표 3-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A)	실 제 수 납 액 (B)	징 수 결 정 대 비 수 납 액 (B - A)
13,403,841	13,018,165	13,008,758	△9,407

〈표 3-2〉 세입결산중 부족수납 현황(2024~202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 납 액 비 율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비율
2024	13,018,165	13,008,758	1,810	7,596	99.9	0.06
2023	13,325,865	13,314,516	2,434	8,914	99.9	0.07
2022	14,750,392	14,738,177	1,120	11,094	99.9	0.08

- 재원별 세입결산액은 이전수입 84.3%, 기타(전년도이월금, 금융자산회수) 12.0%, 내부거래 2.5%, 자체수입 1.2% 순으로 구성됨

〈표 3-3〉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A)	징 수 결 정 액 (B)	결 산 액	
			금 액 (C)	구성비 ^{주1)}
합 계	13,403,841	13,018,165	13,008,758	100.0
이 전 수 입	11,371,370	10,964,741	10,964,741	84.3
기 타	1,558,150	1,558,150	1,558,150	12.0
내 부 거 래	330,000	330,000	330,000	2.5
자 체 수 입	144,320	165,273	155,866	1.2

※ 주1) 세입결산액(13조 87억 5,800만원)에 대한 구성비

(2) 이전수입

-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이 주된 세입원임
- '24회계연도 **이전수입**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4.3%, 10조 9,647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11조 3,713억 7,000만원) 보다 △4,066억 2900만원 감수납된 바,
 - ①**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국세 결손에 따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감교부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중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 조정예 따라 예산현액 보다 △3,815억 100만원 감수납되었으며
 - ②**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의 경우에도 시도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전입금 등의 감액교부 등으로 예산현액 보다 △320억 1,200만원이 감수납되었으나,

- ③**기타이전수입**의 경우,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예산현액(81억 2,800만원) 전액이 수납되고, 민간이전수입은 68억 8,400만원 증가하여 예산현액(203억 8,500만원)보다 68억 8,400만원 초과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표 3-4〉 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A)	징수결정액 (B)	결 산 (수 납) 액		예 산 현 액 대 비	
			금 액 (C)	구성비 ^{주1)}	증 감 액 (C - A)	수납률 (C / A)
합 계	11,371,370	10,964,741	10,964,741	84.3	△406,629	96.4
중앙정부이전수입	6,820,694	6,439,193	6,439,193	49.5	△381,501	94.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530,290	4,498,277	4,498,277	34.6	△32,012	99.3
기 타 이 전 수 입	20,385	27,269	27,269	0.2	6,884	133.8

※ 주1) 세입결산액(13조 87억 5,800만원)에 대한 구성비

①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됨
- '24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중앙정부이전수입**은 6조 4,391억 9,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49.5%를 차지하는 바,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된 것이나, 당초 계획한 예산현액(6조 8,206억 9,400만원) 보다 △3,815억 100만원 감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5〉 중앙정부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수납)액		예산현액대비	
			금액(C)	구성비 ^{주1)}	증감액 (C - A)	수납률 (C/A)
합계	6,820,694	6,439,193	6,439,193	49.5	△381,501	9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37,202	5,960,313	5,960,313	45.8	△376,888	94.1
보통교부금	5,918,436	5,551,715	5,551,715	42.7	△366,721	93.8
특별교부금	242,642	232,475	232,475	1.8	△10,167	95.8
증액교부금	176,123	176,123	176,123	1.4	0	100.0
국고보조금	32,771	32,771	32,771	0.3	0	100.0
특별회계전입금	450,720	446,108	446,108	3.4	△4,612	99.0

※ 주1) 세입결산액(13조 87억 5,800만원)에 대한 구성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은 '23년 10월, 교육부에서 통지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5조 9,034억 3,800만원) 전액을 '24회계연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통지에 따른 증액분(106억 3,100만원)과 정부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제잉여금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43억 6,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 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와 연동되는 보통교부금 재원 또한 감액됨에 따라, '24년 11월, 교육부로부터 '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조정(안)이 통보된 바, '24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5조 5,517억 1,500만원이 수납되었음

〈표 3-6〉 2024회계연도 보통교부금 전입 및 정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 산 편 성 액 (A)			결 산 액 (B) (실 전 입 금)	예 산 현액 대비 증 감 액 (C = B - A)	증 감 액 발 생 사 유
합	계	예 정 교 부 (24년도 본예산) 확 정 교 부 증 감 (24년도 1회 추경)			
5,918,436	5,903,438	14,998 ^{주1)}	5,551,715	△366,721	국세수입 감소에 따 른 감 교 부

※ 주1) 교육부 확정교부 통지에 따른 증액분 106억 3,100만원 + 세계잉여금 정산 교부분 43억 6,700만원

- 아울러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13개 항목으로 측정하면서 '23년도부터 재정집행 효율화 항목에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월률 및 불용률'을 본격적으로 반영하였고, 제주를 제외한 16개 교육청에 회계별 이·불용률 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바,
- 서울시교육청은 '2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시 △110억원, '24년도와 '25년도에는 △150억원의 감액을 적용받아 3년 연속 가장 많은 페널티를 받고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재원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7〉 시도교육청 교특회계, 학교회계 이월액, 불용액 비율 및
집행효율화 이월률·불용률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금액

(단위 : 백만원, %)

연도	집행효율화 이·불용률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금액			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					
	'25	'24	'23	이월액 비율			불용액 비율			이월액 비율			불용액 비율		
연도	'25	'24	'23	'23	'22	'21	'23	'22	'21	'23	'22	'21	'23	'22	'21
서울	△15,000	△15,000	△11,000	5.4	4.0	2.4	127	101	3.4	2.7	3.3	6.3	2.1	2.3	2.4
부산	△10,000	1,500	△1,000	6.8	2.1	4.5	3.3	2.8	1.1	2.3	1.5	0.7	0.7	0.8	0.7
대구	9,000	9,000	9,000	3.1	2.3	1.4	0.9	0.9	2.2	1.5	1.7	2.0	0.3	0.4	0.5
인천	11,500	△11,000	11,500	3.2	3.2	2.1	0.7	1.0	0.9	0.2	0.6	1.1	1.5	1.0	1.0
광주	3,800	9,000	△2,000	2.4	2.6	4.8	1.2	1.4	2.0	2.1	1.9	1.2	0.5	0.6	0.7
대전	9,000	8,000	8,000	1.8	1.0	0.3	0.6	0.8	1.3	1.2	1.8	0.3	0.4	0.6	0.8
울산	8,000	8,000	8,000	3.0	1.2	0.9	0.7	0.9	1.4	0.1	0.0	0.4	0.4	0.4	0.6
세종	8,000	8,000	8,000	3.7	2.3	3.2	0.5	0.6	0.4	0.0	0.1	0.1	0.8	0.7	1.0
경기	△15,000	△13,000	△1,000	7.1	7.6	3.7	3.0	2.8	1.7	3.8	3.9	2.4	0.8	0.8	0.9
강원	3,800	8,000	8,000	1.7	0.9	0.7	1.8	1.0	0.9	1.3	0.3	1.1	1.0	0.8	1.0
충북	4,200	4,200	8,000	1.8	0.9	1.4	1.2	0.7	0.9	1.0	2.0	1.0	1.4	1.2	1.4
충남	6,300	11,500	9,000	3.7	3.1	2.6	0.5	0.6	0.5	1.7	1.3	3.1	0.6	0.5	0.6
전북	△5,500	△3,700	2,500	4.5	3.3	3.9	1.0	0.4	0.5	3.2	3.0	2.2	1.0	0.7	0.8
전남	△7,500	6,300	2,500	5.7	2.1	2.8	1.2	1.0	1.7	2.6	2.4	2.4	0.7	0.9	1.2
경북	△11,500	△11,500	11,500	105	7.9	2.0	1.4	0.5	0.7	3.4	5.0	2.9	0.8	0.8	1.1
경남	△5,000	11,500	11,500	4.9	2.7	2.3	0.7	0.4	0.7	2.9	2.3	1.0	0.6	0.6	0.8
제주	-			5.9	6.9	5.7	1.1	1.6	1.0	2.9	4.3	4.6	0.8	0.7	2.0

(음영표시) 해당년도중 가장 높은 페널티 금액, 이월액·불용액 비율을 기록한 수치 (제주 제외)

※ 자료출처

- ① 한국교육개발원, 수탁기술보고 CTR 2024-39-01 ('24.11),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재구성 p.83 [표 2-Ⅱ-22], p.85 [표 2-Ⅱ-24], p.96 [표 2-Ⅱ-29], p.97 [표 2-Ⅱ-31]
- ②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71('23. 2.23),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 재구성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51('24. 2.27),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 재구성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222('25. 2.28), “2025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 재구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예산현액(2,426억 4,200만원) 보다 △101억 6,700만원이 감수납된 것으로 전년도 집행결과 반영 등에 따른 감교부로 내시액과 실제 교부액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중액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외 별도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24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경비중 국고부담분 교부예정액을 편성하여 예산현액 1,761억 2,300만원 전액이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관련 법령의 유효기간이 '24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어 '25년도에는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법의 유효기간('24.12.31)을 연장('27.12.31)하는 개정안이 최종 부결됨에 따라 향후 수입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재정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24회계연도 예산현액 327억 7,100만원 전액 수납되었음
- **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당초 교육부의 '24년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교부 예정액 4,507억 2,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 그러나 '24년 9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간 예산을 조정하여 △46억 1,2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기정예산에 대한 경정이 필요하였으나, '24년 6월 이후 추가적인 추경편성이 없어 결산 결과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특별회계전입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한시재원이나,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하면 교육부 소관 국고 일부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합한 영유아 특별회계 신설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관련 법령 개정법률안으로 인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교부 환경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4회계연도의 경우 **중앙정부이전수입중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특별회계전입금**의 하반기 자금교부 변동 등으로 인한 부족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5.6%, △3,815억 100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세입재원인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회계연도중 변동이 발생하면 재정운영의 예측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내시액 변동 결과를 추경으로 경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중앙정부의 자금교부 변동 통지에 따라 당초 예산액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하였을 것이나, 추가적인 예산경정이 없어 '장부상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세입예산과 연동되어 세출예산에서도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하여 결산상 불용규모만 확대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무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 개편과 국고지원 필요성 점검이 예고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체계가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더욱 필요한 환경으로 사료됨

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바,

- '2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액은 4조 4,982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4조 5,302억 9,000만원) 보다 △0.7%, △320억 1,200만원 감수납된 것임

〈표 3-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A)	징수결정액 (B)	결 산 (수 납) 액		예 산 현 액 대 비	
				금액(C)	구성비 ^{주1)}	증 감 액 (C-A)	수납률 (C/A)
합	계	4,530,290	4,498,277	4,498,277	34.6	△32,012	99.3
	법 정 이 전 수 입	4,117,565	4,079,066	4,079,066	31.4	△38,498	99.1
	지 방 교 육 세 전 입 금	1,808,656	1,808,656	1,808,656	13.9	0	100.0
	담 배 소 비 세 전 입 금	263,847	259,319	259,319	2.0	△4,528	98.3
	시 도 세 전 입 금	1,901,000	1,868,058	1,868,058	14.4	△32,942	98.3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987	1,984	1,984	0.1	△3	9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5,070	114,044	114,044	0.9	△1,025	99.1
	교 육 급 여 보 조 금	10,491	10,491	10,491	0.1	430	100.0
	무 상 교 육 경 비 전 입 금	16,511	16,511	16,511	0.1	0	100.0
	비 법 정 이 전 수 입	412,725	419,211	419,211	3.2	6,485	101.6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38,395	238,395	238,395	1.8	△1	100.0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74,329	180,815	180,815	1.4	6,486	103.7

※ 주1) 세입결산액(13조 87억 5,800만원)에 대한 구성비

○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결산액은 4조 790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4조 1,175억 6,500만원) 보다 △384억 9,800만원이 부족수납된 것임

-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의 결산액은 3조 9,360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3조 9,735억 400만원) 보다 △374억 7,000만원 부족 수납된 바, 서울시의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부족 수납된 전입금을 포함한 법정전입금 미정산분(1,479억 4,200만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 추가 전출될 것으로 예상됨

〈표 3-9〉 2024회계연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미전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편성액 (A)	실 전 입 금 (B)	부족 수납액 (A-B)	서 울 시 세 입 결 산 액 (C)	미 전 입 액 (C-B)
합 계	3,973,504	3,936,034	△37,470	4,083,977	147,942
지방교육세전입금	1,808,656	1,808,656	0	1,876,054	67,397
담배소비세전입금	263,847	259,319	△4,528	255,736	△3,583
시 도 세 전 입 금	1,901,000	1,868,058	△32,942	1,952,186	84,12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가 서울시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세액으로, 내시액(1,150억 7,000만원) 보다 △10억 2,500만원 감액 교부된 1,140억 4,40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검토됨

- **학교용지매입시도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 지역의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시·도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3개교(공진초, 공향초, 마곡중)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학교용지 매입비 정산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편성한 것이나,

- 하늘숲초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어 면적과 금액이 확정된 부분을 상계함에 따라 예산현액보다 일부 감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비법정이전수입**의 결산액은 4,192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4,127억 2,500만원) 보다 64억 8,500만원 초과 수납된 것으로 제출된 바,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중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서부교육지원청)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24년 11월, 사업비(64억 8,500만원)가 수납되어, ’24회계연도 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필요시 명시이월이 승인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25년도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예상됨

- 소관 부서는 서대문구로부터 사업비가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한 11월 교부되어 성립전예산 편성 후 명시이월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1차적으로 서대문구청과 교부 시점을 협의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었으며,

- ’24년도에 세입요청된 재원을 ’25년도 세입·세출에 이입시키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물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례를 스스로 만드는 결과일 수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③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과 자치단체간이전수입으로, '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203억 8,500만원) 대비 133.8%, 272억 6,900만원이 수납되어 68억 8,400만원이 초과 수납된 바,

〈표 3-10〉 기타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A)	징수결정액 (B)	결 산 (수 납) 액		예 산 현 액 대 비	
				금액(C)	구성비 ^{주1)}	증 감 (C - A)	수납률 (C / A)
합	계	20,385	27,269	27,269	0.2	6,884	133.8
	민 간 이 전 수 입	12,256	19,140	19,140	0.1	6,884	156.2
	자 치 단 체 간 이 전 수 입	8,128	8,128	8,128	0.1	-	100.0

※ 주1) 세입결산액(13조 87억 5,800만원)에 대한 구성비

- **민간이전수입**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납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지원금이 예산현액(63억 4,600만원) 보다 △11억원 부족수납되고,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등에서 납부하는 학교시설설치비가 예산현액(20억원) 보다 79억 6,900만원 초과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1〉 민간이전수입 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A)	결산(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B - A)	납 부 처
합 계	12,256	19,140	6,884	
학교시설설치비기부채납 등	2,000	9,969	7,969	둔촌주공아파트주택 재건축장비사업조합 외 4곳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6,346	5,246	△1,1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디 지 털 문 해 교 육	14	14	0	서 울 특 별 시 평 생 교 육 진 흥 원
교 육 금 고 협 력	3,895	3,910	15	N H 농 협 은 행 서 울 시 교 육 청 지 점

(3) 자체수입

① 수납액 관련

- **자체수입**은 관련 조례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그 밖에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 '24회계연도 자체수입 결산결과 예산현액(1,443억 2,000만원) 보다 8.0%, 115억 4,600만원 증가된 1,558억 6,600만원이 수납된 것이나, 징수결정액(1,652억 7,300만원)보다는 △5.7%, △94억 700만원이 부족 수납된 것임

〈표 3-12〉 자체수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 결 정 액 (B)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E)
				금 액 (C)	비 율 (C/B)	금 액 (D)	비 율 (D/B)	
합	계	144,320	165,273	155,866	94.3	1,810	1.1	7,596
교 수 학 습 활 동 수 입	소 계	1,544	1,245	1,245	100.0	0.3	0.0	0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0.5	1	1	81.6	0.3	18.4	0
	선택적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1,543	1,243	1,243	100.0	0	0.0	0
행 정 활 동 수 입	소 계	5,597	6,141	6,140	100.0	0	0.0	0.9
	사용료 및 수수료	5,597	6,141	6,140	100.0	0	0.0	0.9
	특 별 부 과 금 및 분 담 금	0	0	0	0.0	0	0.0	0
자 산 수 입	소 계	13,522	9,762	9,721	99.6	0	0.0	41
	자산임대수입	482	491	450	91.6	0	0.0	41
	자 산 매 각 대	13,039	9,270	9,270	100.0	0	0.0	0
이 자 수 입	이 자 수 입	22,480	26,350	26,350	100.0	0	0.0	0
기 타 수 입	소 계	101,176	121,773	112,409	92.3	1,810	1.5	7,554
	제 재 금 수 입	737	2,482	1,554	62.6	6	0.3	920
	기 타 수 입 등	99,955	110,540	110,360	99.8	0	0.0	179
	지 난 연 도 수 입	483	8,751	493	5.6	1,803	20.6	6,454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자체수입 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2,500억 2,800만원)보다 37.7%, 941억 6,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표 3-13〉 2024~2023회계연도 자체수입 수납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2 0 2 4 회 계 연 도			2 0 2 3 회 계 연 도			증 감 수 납 액 (B - D)
		징 결 정 액 (A)	수 납 액 (B)	비율① (B/A)	징 결 정 액 (C)	수 납 액 (D)	비율① (D/C)	
합 계		165,273	155,866	94.3	261,378	250,028	95.7	△94,162
교 수 학 습 활 동 수 입	소 계	1,245	1,245	100.0	1,175	1,174	100.0	71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및수업료)	1	1	81.6	1	1	81.6	0
	선택적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1,243	1,243	100.0	1,173	1,173	100.0	70
행 정 활 동 수 입	소 계	6,141	6,140	100.0	4,625	4,621	99.9	1,519
	사용료 및 수수료	6,141	6,140	100.0	4,625	4,621	99.9	1,519
	특 별 부 과 금 및 분 담 금	0	0	0.0	0	0	0.0	0
자 산 수 입	소 계	9,762	9,721	99.6	31,864	31,829	99.9	△22,108
	자산임대수입	491	450	91.6	539	504	93.5	△54
	자 산 매 각 대	9,270	9,270	100.0	31,324	31,324	100.0	△22,054
이 자 수 입	이 자 수 입	26,350	26,350	100.0	44,866	44,866	100.0	△18,516
기 타 수 입	소 계	121,773	112,409	92.3	178,846	167,536	93.7	△55,127
	제 재 금 수 입	2,482	1,554	62.6	1,595	994	62.4	560
	기 타 수 입 등	110,540	110,360	99.8	166,309	166,257	100.0	△55,897
	지난연도수입	8,751	493	5.6	10,942	284	2.6	209

- 자체수입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의 경우, 12억 4,500만원이 수납되어 직전 회계연도(11억 7,400만원) 보다 6.0%, 7,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24년도 이후 학생 수련활동이 증가하여 학생교육원 급식비 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행정활동수입**은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주차장 등 시설사용료 수납액 증가와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수납액 증가로 직전회계연도(46억 2,100만원) 보다 15억 1,800만원 증가한 61억 4,000만원이 수납되었으나,
- **자산수입**은 자산임대수입과 자산매각대인 토지매각분 감소로 인해 '23회계연도(318억 2,900만원)보다 △69.5%, △221억 800만원 감소한 97억 2,100만원이 수납되었고, **이자수입** 결산액의 경우에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고은행의 수신금리 인하 및 '24년 정기예금과 기타예금을 합한 자금 평균 잔액이 감소함에 따라 직전회계연도(448억 6,600만원) 보다 △41.3%, △185억 1,500만원이 감소한 263억 5,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4〉 예금 이자수입 현황(2024~2022)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합 계 (① + ②)		정 기 예 금 ①		기 타 예 금 ②	
	일 평 균 잔 액	총예금이자 (A = B + C)	일 평 균 잔 액	정기예금이자 (B)	일 평 균 잔 액	기타예금이자 (C)
2024	890,318	26,350 (100.0)	603,672	17,340 (65.8)	286,646	9,010 (34.2)
2023	1,251,025	44,866 (100.0)	1,100,972	40,984 (91.3)	150,053	3,881 (8.7)
2022	1,319,629	19,559 (100.0)	891,890	15,322 (78.3)	427,739	4,237 (21.7)

※ ()는 총예금이자에 대한 비율임

- **기타수입**은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등의 제재금수입 및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입, 보조금등반납금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예산현액(1,011억 7,600만원) 보다 11.1%, 112억 3,200만원 초과된 1,124억 900만원이 수납됨

■ **제재금수입**의 경우 예산현액(7억 3,700만원) 보다 110.7%, 8억 1,600만원 증가된 15억 5,400만원이 수납된 바, 기타제재금수입의 경우, 징계부가금건은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후 3건, 4,50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의 경우 예산현액(690억 9,800만원) 보다 5.9%, 41억 1,100만원 많은 732억 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등반납금수입**은 예산현액(227억 3,400만원) 보다 5.4%, 12억 2,300만원 많은 239억 5,70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검토됨

■ **보조금등반납금수입**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 재정분석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22년도에 신설된 세입과목으로, '23회계연도부터 보조금 등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에 대한 지난 연도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은 보조금등반납금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중 '23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4건, 1만 7천원의 경우에는 **보조금등반납금수입**으로 수납처리 되어야 함에도 징수기관에서 관련 기준을 숙지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수입과목으로 세입조치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례의 경우, '23회계연도 결산에 이어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세입조치 하기에 앞서 세입과목은 물론 반납 처리하기 위한 적정 예산과목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스스로 고백한 사례에 해당되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3-15〉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중 세입과목오류 현황(보조금등반납금수입)

(단위 : 원)

연번	징 수 기 관	수 납 액	세 부 내 역
1	여의도여자고등학교	7,000	'23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	성동공업고등학교	6,000	'23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	아현산업정보학교	2,000	'23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	서울온곡초등학교	2,000	'23년도 급식 식품·관리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계	4건	17,000	

②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관련

- '24회계연도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89억 1,400만원)보다 △17.4%, △13억 1,800만원 감소한 75억 9,6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6〉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단위 : 백만원, %)

회 연 계 도	징 결 정 액 (A)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미 수 납 액	
		금 액 (B)	비 율 (B/A)	금 액 (C)	비 율 (C/A)	금 액 (D=A-B-C)	비 율 (D/A)
2 0 2 4	165,273	155,866	94.3	1,810	1.1	7,596	4.6
2 0 2 3	261,378	250,028	95.7	2,434	0.9	8,914	3.4
2 0 2 2	208,980	196,765	94.2	1,120	0.5	11,094	5.3

-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주로 지난연도수입(64억 5,400만원), 변상금(5억 2,800만원), 연체료(3억 4,500만원) 항목에서 발생한 바,

- **지난연도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85.0%, 64억 5,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수입이 장기 미수납되지 않도록 이월된 미수납액을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17〉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현황(2024~2022)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2023	2022
자	체	수	입			
미	수	납	액	7,596	8,914	11,094
지	난	연	도			
미	수	납	액	6,454 (85.0)	8,228 (92.3)	10,508 (94.7)
전	년	대	비			
증	감	률		△21.6	△21.7	△21.8

※ ()는 자체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비율

〈표 3-18〉 자체수입 미수납액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징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미수납액)
				금액 (D-ABC)	미수납률 (D/A)	구성비율	
합계	30,170	20,763	1,810	7,596	25.2	100.0	
사용료수입	5,117	5,116	0	0.9	0.0	0.0	○ 토지 사용료: 908천원
임대료수입	491	450	0	41	8.4	0.5	○ 토지 임대료: 41,287천원
변상금	785	256	0	528	67.3	7.0	○ 공유재산 변상금: 528,364천원
위약금	976	967	0	8	0.9	0.1	○ 증가산금: 396천원 ○ 입찰보증금: 8,265천원
연체료	417	65	6	345	82.6	4.5	○ 공유재산 연체료: 328,872천원 ○ 기타연체료: 16,357천원
과태료	256	218	0	38	15.0	0.5	○ 학원과태료: 38,630천원
그외수입	13,372	13,193	0	179	1.3	2.4	○ 소송비용: 122,806천원 ○ 변상금분납이자등: 56,405천원
지난연도 수입	8,751	493	1,803	6,454	73.8	85.0	○ 변상금: 4,231,316천원 ○ 위약금및연체료: 636,415천원 ○ 소송비용액: 651,728천원 ○ 과태료: 327,758천원 ○ 대지료: 107,475천원 ○ 분납이자: 96,827천원 ○ 부당이득금등: 402,682천원

※ 전체 자체수입 항목 중 미수납이 발생한 과목에 대한 현황

-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구분하면, ①재산압류중 35억 8,000만원(47.1%), ②채무자 재력부족 16억 2,200만원(21.4%), ③납부자태만 10억 1,400만원(13.4%), ④채무자거소불명 7억 7,800만원(10.2%), ⑤기타 5억 8,600만원(7.7%), ⑥채무자 징수유예 1,300만원(0.2%) 순으로 검토되는 바, 자체수입이 납부자 태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미수납되지 않도록 채권 관리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9〉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① 재 산 압 류 중	② 채 무 자 재 력 부 족	③ 납 부 자 태 만	④ 채 무 자 거 소 불 명	⑤ 기 타	⑥ 채 무 자 징 수 유 예
금 액	7,596	3,580	1,622	1,014	778	586	13
구 성 비	100.0	47.1	21.4	13.4	10.2	7.7	0.2

- 불납결손액은 관련 규칙에 따라 부채의 면제 또는 시효의 완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 '24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직전회계연도(24억 3,400만원) 보다 △25.6%, △6억 2,400만원 감소한 18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불납결손율은 직전회계연도(0.9%) 대비 0.2%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불납결손액 발생 사유는 ①시효완성(17억 9,400만원), ②무재산(900만원), ③기타(700만원)로 제출되었으나, 불납결손액 발생의 상당 부문은 납부태만과 관련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하여도 불납결손액이 많을수록 교육재정의 가용성을 제한하는 요인일 수 밖에 없어 시효완성 직전까지 미수납액을 적극 징구하는 등 결손 처분 사례가 감소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3-20〉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3년 불납결손액	'24년 불납결손액		사 유 별			
		금 액	구 성 비 율	① 시 효 완 성	② 무 재 산	③ 기 타	거 불 소 명
합 계	2,434,882	1,810,624	100.0	1,794,260	9,363	7,000	-
지 난 연 도 입 학 금	-	-	-	-	-	-	-
지 난 연 도 수 업 료	-	363	0.0	363	-	-	-
변 상 금	4,938	-	-	-	-	-	-
위 약 금	5	-	-	-	-	-	-
연 체 료	822	6,965	0.4	6,965	-	-	-
지난연도수입	2,429,117	1,803,296	99.6	1,786,932	9,363	7,000	-

〈표 3-21〉 회계연도별 불납결손 현황(2024~2020)

(단위 : 천원, %)

구 분	2024	2023	2022	2021	2020
불 납 결 손 액	1,810,623 (△25.6)	2,434,881 (117.3)	1,120,429 (705.6)	139,075 (25.3)	110,984 (△51.7)

※ ()는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4) 지방채

- 지방채의 경우, 「24년~'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과 변경계획에는 동 기간 동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24년도 세입예산에 미편성함에 따라 '24회계연도 지방채 현재액은 없음

〈표 3-22〉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발행액	-	-	-	-	-	-	133,440	-

(5) 기타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과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는 바, '24회계연도 기타 결산액은 1조 5,581억 5,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9,437억 9,500만원)보다 △19.8%, 3,856억 4,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3-23〉 기타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수납)액		예산현액대비	
			금액(C)	구성비 ^{주1)}	증감(C-A)	수납률(C/A)
합계	1,558,150	1,558,150	1,558,150	12.0	-	100.0
전년도이월금	1,548,018	1,548,018	1,548,018	11.9	-	100.0
금융자산회수	10,132	10,132	10,132	0.1	-	100.0

※ 주1) 세입결산액(13조 87억 5,800만원)에 대한 구성비

① 전년도이월금

- '24회계연도 **전년도이월금** 결산액은 세입결산액(13조 87억 5,800만원)의 11.9%, 1조 5,480억 1,800만원으로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① 순세계잉여금 7,632억 600만원과 ③명시·사고이월액 7,834억 8,900만원을 수납 처리한 것임

〈표 3-24〉 전년도이월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A)	징수결정액 (B)	결 산 (수 납) 액		예 산 현 액 대 비	
				금 액 (C)	구성비 ^{주1)}	증감(C-A)	수납률(C/A)
합	계	1,548,018	1,548,018	1,548,018	11.9	-	-
	① 순세계잉여금	763,206	763,206	763,206	5.9	-	-
	② 보조금사용잔액	1,322	1,322	1,322	0.0	-	-
	국 고 보 조 금 사 용 잔 액	75	75	75	0.0	-	-
	자치단체보조금 사 용 잔 액	1,247	1,247	1,247	0.0	-	-
	기 타 지 원 금 사 용 잔 액	-	-	-	0.0	-	-
	③ 이 월 금	783,489	783,489	783,489	6.0	-	-
	명 시 이 월 금	263,491	263,491	263,491	2.0	-	-
	사 고 이 월 금	519,998	519,998	519,998	4.0	-	-

※ 주1) 세입결산액(13조 87억 5,800만원)에 대한 구성비

- 전년도이월금중 ②보조금사용잔액은 전년도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기타기관지원금)의 사용잔액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반납금인 바, '24회계연도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13억 2,200만원을 전액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② 금융자산회수

- '24회계연도 **금융자산회수** 결산액은 101억 3,200만원으로 제출한 바, ①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에 따른 융자금원금회수 92억 5,200만원과 ②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보증금 (5건) 8억 8,000만원이 세입처리된 것으로 확인됨

〈표 3-25〉 금융자산회수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A)	징 결 정 액 (B)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금 액 (C)	비 율 (C/B)	금 액 (D)	비 율 (D/B)	
합 계		10,132	10,132	10,132	100.0	-	-	-
	융자금원금회수	9,252	9,252	9,252	100.0	-	-	-
	보 증 금 회 수	880	880	880	100.0	-	-	-

4. 세출결산

(1) 세출결산 총괄

- '24회계연도 최종예산은 12조 6,203억 5,200만원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 7,834억 8,9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조 4,038억 4,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4조 3,880억 600만원) 보다 △6.8%, △9,841억 6,500만원 감소된 것임
- 세출결산 결과 지출액은 11조 9,935억 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4%가 집행되어 직전회계연도(11조 7,664억 9,700만원, 81.7%) 보다 집행률은 7.7%p 증가하였음
 - 불용액은 6,916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1조 1,450억 9,600만원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에도 직전회계연도보다 △654억 500만원 감소된 7,180억 8,300만원으로 제출됨

〈표 4-1〉 세출예산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최종예산 (A)	예산성립 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보 조 금 반납 예 정 액		불 용 액	
				금 액	비율 (D/C)	금 액	비율 (E/C)	금 액	비율 (F/C)	금 액	비율 (G/C- D-E-F) (G)
2024	12,620,352	783,489	13,403,841	11,993,507	89.4	718,083	5.3	649	0.0	691,600	5.1
2023	13,785,862	602,143	14,388,006	11,766,497	81.7	783,489	5.4	1,322	0.0	1,836,696	12.7
증감액	△1,165,510	181,345	△984,165	227,010	7.7	△65,405	△0.0	△673	△0.0	△1,145,096	△7.6
증감률	△8.4	30.1	△6.8	1.9		8.3		△50.9		△62.3	

○ 부문·정책사업별 세출결산 결과를 검토하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총 지출액(11조 9,935억 700만원)의 49.5%, 5조 9,387억 3,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인건비** 부문에서 총 지출액의 47.7%, 5조 7,258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교육일반**에서는 총 지출액의 2.3%, 2,809억 8,200만원이 지출되었음

〈표 4-2〉 부문·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 예정액		집행잔액	
			금액 (B)	비율 (B/A)	구성비 ^{주1)}	금액 (C)	비율 (C/A)	금액 (D)	비율 (D/A)	금액 (E=ABC-D)	비율 (E/A)
합	계	13,403,841	11,993,507	89.4	100.0	718,083	5.3	649	0.0	691,600	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6,964,777	5,938,736	85.3	49.5	676,510	9.7	649	0.0	348,881	5.0
	인적자원운용	73,757	68,241	92.5	0.6	1,095	1.5	0	0.0	4,420	6.0
	교수학습활동지원	1,056,396	782,859	74.1	6.5	223,737	21.2	13	0.0	49,785	4.7
	교육복지	898,541	861,322	95.9	7.2	297	0.0	596	0.1	36,325	4.0
	보건급식	964,889	886,574	91.9	7.4	45,851	4.8	38	0.0	32,424	3.4
	학교재정지원관리	2,317,603	2,297,699	99.1	19.2	0	0.0	0	0.0	19,903	0.9
	학교시설여건개선	1,653,589	1,042,037	63.0	8.7	405,528	24.5	0	0.0	206,023	12.5
평생교육		33,147	32,038	96.7	0.3	0	0.0	0	0.0	1,108	3.3
	평생교육	33,147	32,038	96.7	0.3	0	0.0	0	0.0	1,108	3.3
교육일반		582,717	280,982	48.2	2.3	41,573	7.1	0	0.0	260,162	44.6
	교육행정일반	252,057	200,902	79.7	1.7	13,102	5.2	0	0.0	38,053	15.1
	기관운영	117,693	79,167	67.3	0.7	28,470	24.2	0	0.0	10,055	8.5
	재무활동	212,966	912	0.4	0.0	0	0.0	0	0.0	212,053	99.6
예비비		43,186	15,916	36.9	0.1	0	0.0	0	0.0	27,270	63.1
	예비비 및 기타	43,186	15,916	36.9	0.1	0	0.0	0	0.0	27,270	63.1
인건비		5,780,012	5,725,833	99.1	47.7	0	0.0	0	0.0	54,178	0.9
	인건비	5,780,012	5,725,833	99.1	47.7	0	0.0	0	0.0	54,178	0.9

※ 주1) 전체 지출액(11조 9,935억 700만원) 대비 해당 부문·정책사업의 구성비율임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지출액 증감율이 높은 정책사업을 검토한 결과,

-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14.9%, 1,348억 6,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①학교시설환경개선 1,003억 9,900만원 증가, ②학교 신증설 425억 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재무활동**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99.6%, △2,311억 2,7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세입결손을 대비한 관련 계획에 따라 기금전출금에 대한 △2,120억원을 미집행하여 직전회계연도보다 지출액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 **예비비및기타**는 제 지출금 등이 △293억 9,000만원 감소하여 직전회계연도 대비 △64.9%, △293억 9,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회 계 연 도		2 0 2 3 회 계 연 도		증 감 액 (C = A - B)	증 감 륜 (C / B)
		지출액 (A)	구 성 비	지출액 (B)	구 성 비		
합	계	11,993,507	100.0	11,766,497	100.0	227,010	1.9
	인 적 자 원 운 용	68,241	0.6	67,119	0.6	1,122	1.7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782,859	6.5	703,071	6.0	79,788	11.3
	교 육 복 지	861,322	7.2	767,205	6.5	94,117	12.3
	보 건 급 식	886,574	7.4	1,096,715	9.3	△210,141	△19.2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2,297,699	19.2	2,285,901	19.4	11,798	0.5
	학 교 시 설 여 건 개 선	1,042,037	8.7	907,171	7.7	134,866	14.9
	평 생 교 육	32,038	0.3	33,195	0.3	△1,157	△3.5
	교 육 행 정 일 반	200,902	1.7	205,500	1.7	△4,598	△2.2
	기 관 운 영	79,167	0.7	72,114	0.6	7,052	9.8
	재 무 활 동	912	0.0	232,040	2.0	△231,127	△99.6
	예 비 비 및 기 타	15,916	0.1	45,307	0.4	△29,390	△64.9
	인 건 비	5,725,833	47.7	5,351,153	45.5	374,680	7.0

(2) 불용액

① 불용액(집행잔액) 현황

- '24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13조 4,038억 4,100만원)의 5.1%, 6,916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보다 △62.3%, △1조 1,440억 9,6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4-4〉 최근 3년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 용 률	전년대비 증감액 (증 감 률)
2 0 2 4	13,403,841	691,600	5.1	△1,144,096 (△62.3)
2 0 2 3	14,388,006	1,836,696	12.7	323,986 (21.4)
2 0 2 2	14,929,457	1,512,710	10.1	1,094,450 (261.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 불용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첫째, '24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13조 4,038억 4,100만원)이 직전 회계연도(14조 3,880억 600만원) 보다 △6.8%, △9,841억 6,500만원 감소하였고, 둘째, 회계연도중 재정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배정을 유보(5,773억원)한 바 있어 불용액 규모가 감소됨

-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주를 이루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구조상 교육·시설사업의 편성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불용액 발생 규모 또한 감소된 것으로써 적극적인 사업집행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 증대 보다는 법정 필수경비의 지출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축소 결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서울시교육청의 불용률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보다 높고, 그 차이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된 사례가 있어 불용액(집행잔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해당 소요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확대되어 당해연도 예산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서울시교육청의 불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24회계연도의 경우, 회계연도중 시행한 예산절감계획 등은 불용액(집행잔액) 발생규모를 직전회계연도보다 $\Delta 7.6\%p$, $\Delta 1$ 조 1,440억 9,600만원 감소시킨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 서울시교육청보다 연간 운용하는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서울시의 경우, '24회계연도 예산현액(49조 1,049억 5,000만원)의 2.7%(1조 3,252억 8,000만원)가 불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불용률(예산현액의 5.1%)은 과도한 규모로 판단됨
- 더욱이 회계연도중 예산절감계획을 통해 배정까지 보류한 상황이라면 추경 예산을 통해 기정예산에 대해 감액하는 과정까지 마무리 지어야만 장부상 허수에 불과한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이 최소화 되었을 것이나, 예산배정만 보류한 채 장부상 허수를 그대로 남겨둡으로써 사실상 배정유보액 만큼 불용액 발생규모를 확정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5〉 최근 3년 발생사유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집행잔액)	발 생 사 유 주1)					
			보 조 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 차	찰 액 지 잔	출 액 예 비 비 및 기 타
2024	13,403,841	691,600	15,522 (2.2)	453,930 (65.6)	52,488 (7.5)	8,137 (1.1)	146,272 (21.1)	15,248 (2.2)
2023	14,388,006	1,836,696	189,184 (10.3)	-	1,280,037 (69.7)	38,526 (2.1)	263,569 (14.4)	65,378 (3.6)
2022	14,929,457	1,512,710	46,570 (3.1)	1,066,337 (70.5)	96,331 (6.4)	15,981 (1.1)	264,045 (17.5)	23,442 (1.5)

※ 주1) 「2024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24.12.), p.28

3.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

㉔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 : 자체재원대응투자가 있는 보조사업의 경우 자체재원에 대한 정산 잔액

㉕예산절감액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㉖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및 교육행정기관의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예) 집단민원 발생으로 해당사업 미착공,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하여 발생된 잔액 등

㉗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간 동안 재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임

㉘지출잔액 :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조금반납예정액과 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은 제외

㉙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 과목(710-01, 710-03)의 잔액을 기재

○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전체 불용액(6,916억원)중 ①**예산절감액**이 65.6%, 4,539억 3,000만원, ②**지출잔액**이 21.1%, 1,462억 7,200만원, ③**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5%, 524억 8,800만원, ④**보조금 대응 투자 정산잔액**이 2.2%, 155억 2,200만원, ⑤**예비비및기타**가 2.2%, 152억 4,800만원 순으로 제출됨

- **예산절감액**을 사유로 한 불용액은 기금전출금(2,120억 100만원)을 포함하여 4,539억 3,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순증하였고,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한 불용액은 524억 8,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조 2,800억 3,700만원)보다 △95.9%, △1조 2,275억 4,800만원이 감소한 것임
- 직전회계연도 대비 **예산절감액**은 증가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전체 불용액(6,916억원)중 30.7%를 차지하는 기금 전출금(2,120억 100만원)을 분류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23년도에는 이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으로 분류하였으나, '24년도에는 관련 계획에 따라 기금전출금 예산을 배정유보하여 이를 **예산절감액**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을 검토하면, ①**미래학교추진단** 2,147억 2,600만원(31.0%), ②**예산담당관** 708억 8,600만원(10.2%), ③**교육시설안전과** 515억 4,000만원(7.5%) 순으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 **미래학교추진단**의 경우, 불용액(2,147억 2,600만원)의 99.7%, 2,142억 2,400만원이 **예산절감액**의 사유로 불용된 것으로, 기금전출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120억 100만원과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 21억 4,300만원 등인 것으로 검토됨
 - **예산담당관**의 경우, 불용액(708억 8,600만원)중 **지출잔액**을 사유로 51.6%, 365억 8,900만원이 불용되고, **예산절감액**을 사유로 27.0%, 191억 4,800만원, **예비비맞기타**의 사유로 21.3%, 151억 4,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교육시설안전과**의 경우, 불용액(515억 4,000만원)중 **예산절감액**을 사유로 59.0%, 304억 3,100만원이 불용되고, **지출잔액**을 사유로 25.9%, 133억 8,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12.0%, 62억 1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4-6A〉 사업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부서	예산현액	불용액	구 성 비 ^계	발 생 사 유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 및기타
합 계	13,403,841	691,600	100.0	15,522 (2.2)	453,930 (65.6)	52,488 (7.6)	8,137 (1.2)	146,272 (21.1)	15,248 (2.2)
대 변 인	4,639	188	0		112		15	60	
감 사 관	899	111	0		39		0	72	
총 무 과	114,223	19,116	2.7		2,600		0	16,516	
안전총괄담당관	24,955	577	0		539		0	38	
유보통합추진단	5,273	238	0		171		0	67	
정 책 기 획 관	3,131	279	0		128		1	149	
예 산 담 당 관	5,346,295	70,886	10.2		19,148	2	0	36,589	15,145
행정관리담당관	1,701	428	0		223		0	205	
학생맞춤지원담당관	167,992	12,189	1.7	891	7,483		0	3,814	
노사협력담당관	821,563	17,258	2.5		10,933	3	0	6,320	
교육협력담당관	1,841	166	0		108		0	57	
창의미래교육과	633,571	37,335	5.4		21,254	5,186	284	10,609	
유 아 교 육 과	561,140	7,586	1.1		407	4,736	0	2,442	
초 등 교 육 과	176,937	8,456	1.2		6,886		0	1,569	
중 등 교 육 과	235,655	13,891	2.0		12,548	15	0	1,327	
학생맞춤교육혁신과	108,837	6,749	0.9		3,920		0	2,828	
평 생 교 육 과	36,313	2,622	0.3		869	1,491	7	254	
민주시민교육과	44,982	4,257	0.6		3,274	25	1	956	
진로직업교육과	56,826	1,093	0.1		1,020		0	72	
체육건강예술교육과	887,110	20,075	2.9	14,631	3,854	516	7	1,066	

〈표 4-6B〉 사업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부서	예산현액	불용액	구 성 비 ^{주1)}	발 생 사 유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및기타
특 수 교 육 과	48,695	1,148	0.1		536	111	0	500	
학 교 지 원 과	1,491,957	6,780	0.9		4,466	890	7	1,416	
교 육 재 정 과	36,755	502	0.0		228	1	0	272	
교육시설안전과	493,054	51,540	7.4		30,431	6,201	1,518	13,388	
미래학교추진단	219,887	214,726	31.0		214,224	399	32	69	
청사이전추진단	90	18	0.0		18		0		
동부교육지원청	92,025	9,353	1.3		4,760	1	0	4,592	
서부교육지원청	152,431	16,823	2.4		9,462	3,602	702	3,056	
남부교육지원청	147,410	14,488	2.0		7,845	4,215	808	1,619	
북부교육지원청	131,935	9,406	1.3		3,940	2,882	806	1,674	102
중부교육지원청	71,612	7,400	1.0		2,582	42	0	4,774	
강동송파교육지원청	236,845	25,429	3.6		9,200	9,787	0	6,442	
강서양천교육지원청	186,463	24,912	3.6		13,545	2,141	1,152	8,072	
강남서초교육지원청	152,926	11,315	1.6		7,208	498	1,029	2,578	
동작문악교육지원청	99,735	7,667	1.1		5,240	452	0	1,975	
성동광진교육지원청	69,378	9,795	1.4		6,861	1,539	119	1,275	
성북강북교육지원청	89,491	5,968	0.8		2,374	1,783	1,296	513	
직 속 기 관 ^{주 2)}	449,247	50,812	7.3		35,478	5,960	346	9,028	

※ 주1) 구성비는 전체 불용액(6,916억원)중 해당 사업부서의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주2) 직속기관은 교육연구정보원,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4개관), 도서관(17개관)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 교육부는 지난 '20년도에 「2021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개정하며 불용액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해 **보조금 반납예정액과 집행잔액(불용액)**을 분리한 바 있음

- **보조금 반납예정액**은 '24년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중 반환(예정)할 금액으로 '24회계연도 결산결과 6억 4,900만원의 보조금 반납예정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4-7〉 최근 3년 발생사유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보조금반납예정액	불 용 액 (집 행 잔 액)
2 0 2 4	13,403,841	649	691,600
2 0 2 3	14,388,006	1,322	1,836,696
2 0 2 2	14,929,457	3,559	1,512,71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 보조금 지원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포함하여 편성·심의·의결·집행되고 있어 보조금 미집행 예산을 집행잔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는 도구로 오용될 수 있고, 보조금 반납예정액만큼 재정책임이 희석되는 이른바 '불용액에 대한 착시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 재정운용의 책임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8〉 보조금 반납예정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 부 사 업	보 조 금 반납예정액	발 생 사 유 (재 원)
합	계	649	
학 생 맞 춤 지 원 담 당 관	교 육 비 지 원	531	입 학 준 비 금 잔 액 (지 방 자 치 단 체 보 조 금)
유 아 교 육 과	누 리 과 정 지 원	64	만 3 ~ 5 세 유 아 학 비 잔 액 (지 방 자 치 단 체 보 조 금)
학 생 역 량 혁 신 교 육 과	교육과정운영지원	13	원 어 민 배 치 활 용 잔 액 (지 방 자 치 단 체 보 조 금)
체 육 건 강 예 술 교 육 과	교육과정운영지원	0.1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배치지원(연수비) 잔액 (국 고 보 조 금)
	학 교 보 건 관 리	34	학 교 흡 연 예 방 사 업 잔 액 (국 고 보 조 금)
	학 교 급 식 운 영	2	무 상 급 식 비 잔 액 (지 방 자 치 단 체 보 조 금)
	학 교 급 식 운 영	1	(기 초) 무 상 급 식 비 잔 액 (지 방 자 치 단 체 보 조 금)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②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111개 세부사업중 10개 세부사업에서 전체 불용액(6,916억원)의 78.8%, 5,450억 6,700만원이 불용된 것임

〈표 4-9〉 불용액 발생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주1.2)	2 0 2 4 회 계 연 도				2 0 2 3 회 계 연 도				불 용 액 증 감 액 (B - D)
	예산현액 (A)	불 용 액 (B)	불용률 (B/A)	구성비 주3)	예산현액 (C)	불 용 액 (D)	불용률 (D/C)	구성비 주4)	
합 계	9,377,569	545,067	5.8	78.8	10,010,517	1,607,070	16.1	87.5	△1,062,003
기금전출금	212,001	212,001	100.0	30.6	1,384,439	1,153,311	83.3	62.7	△941,310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1,474,367	191,390	12.9	27.6	1,717,566	333,148	19.3	18.1	△141,758
I C T 활 용 교 육 지 원	538,842	29,461	5.4	4.2	131,088	3,425	2.6	0.1	26,036
교원인건비	3,988,288	22,769	0.5	3.2	3,861,197	12,756	0.3	0.6	10,013
방과후학교 운 영	143,644	17,736	12.3	2.5	15,236	366	2.4	0.0	17,370
학 교 급 식 운 영	782,339	17,251	2.2	2.4	956,263	54,990	5.7	2.9	△37,739
교육공무원 인 건 비	719,668	15,966	2.2	2.3	521,765	14,537	2.7	0.7	1,429
선 거 관 리	58,875	14,918	25.3	2.1	-	-	-	-	14,918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138,474	12,706	9.1	1.8	111,462	7,272	6.5	0.4	5,434
인건비재정 결 함 지 원	1,321,071	10,869	0.8	1.5	1,311,501	27,265	2.0	1.4	△16,396

※ 주1) 불용액 100억원 이상 세부사업으로 한정함

주2) 내부유보금, 예비비 불용액은 제외함

주3) 2024회계연도 총 불용액(6,916억원) 대비 세부사업의 불용액 비율임

주4) 2023회계연도 총 불용액(1조 8,366억 9,600만원) 대비 세부사업의 불용액 비율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1) 재무활동

○ 재무활동은 예산현액(2,129억 6,600만원)의 99.6%, 2,120억 5,3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표 4-10〉 재무활동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 용 률	전년대비 증감액 (증 감 률)
2 0 2 4	212,966	212,053	99.6	△941,309 (△81.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 재무활동중 대규모로 불용액이 발생된 **기금전출금**은 전체 불용액(6,916억원)의 30.6%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산절감액을 사유로 하여 2,120억 1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됨

〈표 4-11〉 발생사유별 불용액 현황(재무활동)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불 용 액	발 생 사 유						
			보 조 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 차	찰 액	지 출 잔 액	예비비 및기타
합 계	212,966	212,053	-	212,053	-	-	-	-	-
기 금 전 출 금	212,001	212,001	-	212,001	-	-	-	-	-
민간투자사업상환	912	-	-	-	-	-	-	-	-
일시차임금관리	52	52	-	52	-	-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 서울시교육청은 '24회계연도 세입결손 대비를 위하여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전출금** 2,120억 1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기금으로 미전출)한 것으로,
- 회계연도중 교육부가 세수여건 악화를 이유로 보통교부금을 기편성액(5조 9,140억 6,900만원)보다 △3,667억 2,100만원 감액한 5조 5,473억 4,700만원으로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 감액조정에 따른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경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실제 교육부의 자금 재조정은 '24년 11월에 통보되어 추경을 통한 예산조정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불용사례의 경우, 이미 편성된 보통교부금의 일부가 교부되지 않아 회계상 허수에 불과한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회계연도 중 교부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는 예산액을 감액조정하지 않았기에 세출결산에 불용액 발생규모를 증가시켜 재정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판단됨
- 아울러 동 **기금전출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한 전출 예산으로서, **기금전출금**이 불용되어 이와 연동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재정안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친 바, 지난 '23년도에도 **기금전출금** 2,315억원 전액 전입되지 못하였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교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2년 연속 0원인 것으로 검토되어 기금운용의 취지인 '교육시설 공간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반하는 결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사료됨

〈표 4-12〉 기금전출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세부사업	세 세 부 사업	예 산 현 액				집 행 액	불 용 액	
			본예산	추 경	예산집행후 증 감 액	계		금 액	비율
2024	기 금 전 출 금	교 육 시 설 환경개선기금	-	268,545	△56,543	212,001	-	212,001	100.0
2023	기 금 전 출 금	교 육 시 설 환경개선기금	231,500	-	-	231,500	-	231,500	100.0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 서울시교육청이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적자재정을 피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기금 전출금**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사료되나,

- 보통교부금 감액조정으로 부족해진 재정(△3,667억 2,100만원)의 57.8%를 특정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원(2,120억 100만원)에 의존함으로써 의회의 심의에 의해 확정된 사업계획의 이행을 집행기관 판단으로 유보한 것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한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인건비

- 인건비는 예산현액(7조 1,010억 8,300만원)의 0.9%, 650억 4,700만 원을 불용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 인건비 불용 규모보다 △0.1%p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인건비 불용액은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된 것으로 세부사업별로 불용액 규모를 검토하면 **교원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건비재정결함지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순으로 불용액 발생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됨

〈표 4-13〉 발생사유별 불용액 현황(인건비)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불 용 액	발 생 사 유						
			보 조 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액	계약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 차	찰 지 액 잔	출 액 및 기	예 비 비 비 타
합 계	7,101,083	65,047 (100.0)	-	22,701 (34.9)	-	-	42,346 (65.1)	-	-
교 원 인 건 비	3,988,288	22,769	-	2,180	-	-	20,589	-	-
교육공무직원 인 건 비	719,668	15,966	-	10,510	-	-	5,455	-	-
인건비재정 결 함 지 원	1,321,071	10,869	-	9,488	-	-	1,380	-	-
계약제교원 인 건 비	395,584	9,942	-	81	-	-	9,860	-	-
지방공무원 인 건 비	568,419	2,164	-	150	-	-	2,014	-	-
계약제근로자 인 건 비	36,666	1,906	-	153	-	-	1,753	-	-
교육전문직원 인 건 비	71,383	1,428	-	136	-	-	1,292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 예산담당관 소관 **교원 인건비**는 예산현액(3조 9,882억 8,800만원) 대비 0.6%, 227억 6,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 불용액(127억 5,600만원)보다 100억 1,300만원 증가된 것으로 **보수**를 포함한 4개 사업내용에서 발생한 불용률은 0.5~2.1%로 개별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나,

〈표 4-14〉 교원인건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E)	불용액	
		본예산액 (A)	추경증감액 ^제 (B)	변경사용 (C)	계 (D=A+B+C)		금액 (F=D-E)	비율 (F/D)
합	계	3,969,340	18,923	24	3,988,288	3,965,519	22,769	0.6
	보수	2,943,183	13,923	24	2,957,131	2,943,341	13,790	0.5
	법정부담금	857,563	-	-	857,563	851,237	6,326	0.7
	명예퇴직수당	107,600	5,000	-	112,600	110,288	2,311	2.1
	맞춤형복지비	60,993	-	-	60,993	60,651	341	0.6

※ 주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24. 6.25) 증액 사유

- 보수: 교직수당가산금 인상(학급담당교사)에 따른 추가 소요액 139억 2,300만원 증액
- 명예퇴직수당: 초등 교원 및 중등 교육전문직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50억원 증액

- **교원인건비** 예산현액(3조 9,882억 8,800만원)이 '24회계연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현액(13조 4,038억 4,100만원)의 29.8%를 점하고 있어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하여도 불용액의 절대규모는 작지 않은 바, ①보수의 경우, 137억 9,000만원(예산현액대비 0.5%)이 불용되고, ②법정부담금은 63억 2,600만원(예산현액대비 0.7%), ③명예퇴직수당은 23억 1,100만원(예산현액대비 2.1%), ④맞춤형복지비는 3억 4,100만원(예산현액대비 0.6%)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교원인건비**중 **명예퇴직수당**은 예산현액(1,126억원)중 1,102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 1,100만원이 불용된 것이나,

〈표 4-15〉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E)	불용액 (F = D - E)
		본예산액 (A)	추경증감액 (B)	변경사용 (C)	계 (D=A+B+C)		
합	계	107,600	5,000	-	112,600	110,288	2,311
	초 등 교 원	53,800	5,000	-	58,800	60,515	△1,715
	중 등 교 원	53,800	-	-	53,800	49,772	4,02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 결산결과 초등교육과 소관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은 예산현액(588억원)보다 17억 1,5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것으로,
- 명예퇴직 희망자 조사 결과, 당초 예상 인원(588명)보다 18명 많은 606명(상반기 489명, 하반기 117명)이 신청함에 따라 신청자 모두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하여 명예퇴직수당(605억 1,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17억 1,500만원이 중등교원 대상 명예퇴직수당에서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이전되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됨
- 소관부서는 초등교원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예산의 이용을 통해 확보하여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예산의 변경절차 없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바,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이 동일 세부사업인 **교원인건비**의 사업내용에 있어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이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될 수 있으나,

- 관련 해설서에 따르면 동일 세부사업이라도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이용 절차를 통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예산서에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 예산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지난 '23회계연도에도 이미 공무원의 보수중 **교원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타 부서로부터 예산을 이용한 선례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용을 통하지 않고, 동일 세부사업에 편성된 사업내용이라 하여 다른 부서의 재원을 임의로 융통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됨
 - 특히, 관련 법령은 예산을 각 기관 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자의적으로 융통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관련 법령의 단서로써 일정 요건 하에 “예산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예산을 임의로 융통한 동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한 결과인 것은 물론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예산에 대해 집행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회계질서문란 사례일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아울러 **교원인건비**중 중등교육과 소관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예산 현액(538억원)의 7.4%, 40억 2,7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명예퇴직 희망자 조사 결과, 당초 예상한 인원(538명)보다 18명 많은 556명(상반기 456명, 하반기 100명)이 신청하여, 신청자 모두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임

- 소관부서는 불용사유를 **예산절감액**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발적인 절감 노력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2024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이 정하고 있는 **예산절감액**은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불용 사례의 경우, 통상적인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잔액 즉, 세출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지출잔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교육부가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통해 불용액 발생사유를 구분하고 있고 불용사유가 **지출잔액**에 따른 것임에도 **예산절감액**으로 분류한 것은 추계부실에 따른 과다 편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용액 발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예산절감이라는 용어가 남용되지 않도록 불용사유를 분류하는 학습과 결산총괄부서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지난 '24년 6월,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보수**의 경우, 139억 2,300만원을 추가편성한 바 있고,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도 50억원을 추가편성한 바 있으나, **보수**의 경우, 추경 증액분(139억 2,300만원)에 해당하는 137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고, **명예퇴직수당**은 추경 증액분(50억원)의 46.2%에 해당하는 23억 1,1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시교육청이 직면하고 있는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할 때 과연 해당 사업내용에 대한 추가 소요자원 편성이 실제 필요하였던 사안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예산현액(7,196억 6,800만원) 대비 2.2%, 159억 6,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 불용액(145억 3,700만원) 보다 14억 2,8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4-16〉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액 (A)	추경증감액 ^{주1)} (B)	변경사용 ^{주2)} (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불용액 (F=D-E)	불용률 (F / D)
합	계	721,918	△750	△1,500	719,668	703,701	15,966	2.2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707,365	-	△1,500	705,865	690,274	15,591	2.2
	맞춤형복지비	14,552	△750	-	13,802	13,427	374	2.7

※ 주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24. 6. 25) 증·감액 사유

- 맞춤형복지: 예상 인상액 대비 실제 배정액 감소에 따른 차액 등 △7억 5,000만원 감액

주2) 변경사용 사유

- 교육공무직원인건비(사립학교공무직원인건비지원) 15억원을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장애인근로자인건비)로 전용함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중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에서 불용액이 155억 9,100만원 발생된 것이나,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중 15억원을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계약제근로자인건비로 전용하여 예산액중 △15억원이 감액되었음에도 '23회계연도(142억 9,200만원)에 이어 '24회계연도에도 대규모 불용(155억 9,1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2024년 단체협약에 따른 맞춤형복지 인상 결과 당초 편성액이 실제 배정소요액보다 과잉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추경을 통해 그 차액만큼 감액조정(△7억 5,000만원) 하였음에도 3억 7,0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확인됨

- **교육공무원 인건비**는 단체협약에 따른 보수 및 법정부담금, 처우개선비 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전체 세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와 연동하여 발생하는 불용액 또한 매년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정밀한 수요분석을 토대로 소요액을 산정하고 회계연도중 불용예상액은 적극 조정하여 한정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중등교육과 및 학교지원과 소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 중·고·특수학교 300교에 인건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1조 3,210억 7,100만원) 대비 0.8%, 108억 6,900만원이 불용된 것임

〈표 4-17〉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 예산액 (A)	추경증감액 (B)	변경사용 (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불용액 (F=D-E)	불용률 (F / D)
합	계	1,321,071	-	-	1,321,071	1,310,202	10,869	0.8
	인 건 비 재정결함보조	1,207,434	-	-	1,207,434	1,206,837	596	0.0
	교 원 명 예 퇴 직 수 당	29,520	-	-	29,520	22,058	7,461	25.3
	사 무 직 원 명예퇴직수당	843	-	-	843	819	23	2.8
	맞춤형복지비	18,924	-	-	18,924	17,628	1,295	6.8
	사 립 교 원 성과상여금	58,560	-	-	58,560	57,086	1,473	2.5
	사립사무직원 성과상여금	5,789	-	-	5,789	5,771	17	0.3

- 학교지원과 소관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에서 발생한 불용액 5억 9,600만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사립학교의 교직원 수 보다 실제 보조금 지원 인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 중등교육과 소관 **교원명예퇴직수당**에서 발생한 불용액 74억 6,100만원은 명예퇴직 최종 신청인원이 280명으로 당초 예상인원(360명)보다 △80명 감소되어 지출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 중등교육과 소관 **사립교원성과상여금**에서 발생한 불용액 14억 7,300만원의 경우에도 실제 신청 금액이 예상보다 감소되어 지출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인건비의 경우, 예산편성 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의 시차로 인하여 대상 인원과 보수 수준 등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회계연도중 발생하는 휴직이나 퇴직 등의 경우 사전예측이 어려워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발생하는 불용액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아 회계연도중 인건비의 집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24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인건비 관련 예산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세출재원의 한정성은 물론 한정된 세출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 우선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3) 시설사업비

- 시설사업비는 예산현액(1조 8,698억 9,100만원)의 12.0%, 2,253억 2,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지난 '23회계연도 보다 불용률이 △6.1%p 낮아진 것이나, 시설사업비 예산현액이 직전회계연도보다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사료됨
- 불용액을 발생 사유별로 구분하면, 시설사업비 전체 불용액(2,253억 2,200만원)중 ①예산절감액이 54.3%, 1,224억 1,900만원, ②지출잔액이 24.1%, 543억 6,100만원, ③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8.1%, 407억 9,000만원, ④낙찰차액이 3.3%, 76억 4,800만원, ⑤예비비및 기타가 0.05%, 1억 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표 4-18〉 발생사유별 불용액 현황(시설사업비)

(단위 : 백만원, %)

세 사	부 업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발 생 사 유					
				보 조 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액	계획변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 찰 액	지 잔 액	예 비 비 및 기 타
합	계	1,869,891	225,322 (100.0)	-	122,419 (54.3)	40,790 (18.1)	7,648 (3.3)	54,361 (24.1)	102 (0.05)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1,474,367	191,390 (100.0)	-	106,933 (55.8)	32,639 (17.0)	6,628 (3.4)	45,085 (23.5)	102 (0.05)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138,474	12,706 (100.0)	-	7,771 (61.1)	2,744 (21.6)	313 (2.4)	1,877 (14.7)	-
학 교 신 증 설		135,235	8,698 (100.0)	-	2,732 (31.4)	2,143 (24.6)	260 (2.9)	3,562 (40.9)	-
기 관 시 설 유 지 관 리		77,828	6,592 (100.0)	-	1,656 (25.1)	1,468 (22.2)	283 (4.3)	3,184 (48.3)	-
학 교 시 설 확 충		43,986	5,934 (100.0)	-	3,324 (56.0)	1,794 (30.2)	162 (2.7)	651 (10.9)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시설환경개선**은 예산현액(1조 4,743억 6,700만원)의 13.0%, 1,913억 9,000만원이 불용된 바,

- **GHP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공립)**의 경우, 공립학교에 가스열펌프(GHP)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예산현액(98억 700만원)중 99.1%, 97억 2,4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내용의 경우, '24년 4월과 6월, 감사원에 동 사업예산의 계약 관련 감사제보와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어 당 해연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됨

■ 다만, 동 불용사업에 대해 소관부서는 **예산절감액**을 사유로 97억 2,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교육부의 관련 기준에 따르면 '집단민원 발생으로 해당사업 미착공,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등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실제로 동 불용사례는 감사원의 감사 착수로 인하여 사업이 중지된 것이며 감사 착수는 행정환경의 일시적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사료되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으로 불용액 발생사유가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난 '22년 6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025년 1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 '24년 10월, 저감장치 개발 지연 등의 사유로 준법의지가 있어도 연내 법령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안내한 바,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에 대해 '24년 12월 말까지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개선계획(저감장치 부착, GHP 폐쇄)을 수립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 사업이 지체된 것이라 하여도 개선계획수립 등 적의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신남초 노후교사개축 증개축시설비(1차)**(강서양천교육지원청)사업의 경우, 예산현액(102억 5,200만원)의 44.8%, 45억 9,300만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처리된 것으로,
- 1차분에 대한 공사 준공일이 '2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미 '23회계연도로부터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어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사안으로 확인됨
 - 동 사업예산은 이월과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22년도에 110억원이 신규편성된 이후 **기타**의 사유로 '23년도로 명시이월(108억 9,000만원)되었고, 그후 **계약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24년도로 재이월(102억 5,200만원)되었으나,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바,
 - 결과적으로 3개년에 걸쳐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당초 편성된 예산(110억원)중 56억 5,900만원(51.4%)만 집행되고, 45억 9,300만원(48.5%)이 불용된 것임
 - 소관부서는 사업비가 증가되어 투자심사를 재이행하는 등에 따른 행정절차가 지연되었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공기 산출의무로 부득이 공사기간을 16개월로 산정하여 준공일을 '25년 12월로 계획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회계연도 결산 심의시 동 이월예산(102억 5,200만원)은 '24년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 불가 사업의 재이월에 따른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적하였고, 실제 지적인 대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된 사례로서 결국 한정된 예산을 장기간에 걸쳐 잠식한 결과로 사료됨
- 교육부의 관련 기준에 따르면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시설사업은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구분하여 집행가능금액 만큼만 편성하고,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후교사 개축과 같은 장기계속적인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의 방법도 고려하여 다년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19〉 신남초 증개축시설비(1차) 예산 집행 현황(2022~2025)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 연 이월액	집 행 액
		전 년 도 이월액	본예산	추 경 증감액	계			
2025	신 남 초 시 설 비	-	6,000	-	6,000	-	-	-
	신남초 증개축시설비(2차)	5,360	-	-	5,360	-	-	-
2024	신남초 증개축시설비(2차)	-	6,200	-	6,200	839	5,360	1
	신남초 증개축시설비(1차)	10,252	-	-	10,252	5,659	-	4,593
2023	신남초 증개축시설비(1차)	10,891	-	-	10,891	276	10,252	363
2022	신남초 증개축시설비(1차)	-	11,000	-	11,000	-	10,891	10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06('23. 4.2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10102('23. 4.2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 **염창중 교사동 외벽개선, 용곡중 교사 드라이비트 해소, 용곡초 본관동 드라이비트 해소**의 경우, 예산현액(44억 3,700만원) 대비 96.9%, 43억 200만원이 예산절감액을 사유로 불용처리된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 동 사업예산은 실질적인 집행계획 및 설계용역 등이 일부 진행되었음에도 내진보강사업과 연계되어 내진보강 구조설계 반영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여 불용처리된 것으로 판단됨
 - 내진보강사업과 연계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 조사와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불용된 사례로 판단됨에도 “예산절감액”을 불용 사유로 처리하여 제출한 것은 불용사유를 과도하게 포장하는 사례일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례로 판단됨
- **구현초 교사동 드라이비트**(서부교육지원청)는 '23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6억 8,300만원)으로 '24년 6월 공사가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24년도 본예산에 9억 8,000만원을 중복 편성한 것으로,
 -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을 소홀히 하여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9억 8,000만원)을 전액 불용시킨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점에서도 적절한 감액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더욱 압박한 사례로 판단되기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례로 사료됨

〈표 4-20A〉 학교시설환경개선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부서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률	발 생 사 유
교육시설 안전과	GHP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공립) 재배정잔액	9,807	9,724	99.1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신남초 노후교사개축 증 개 축 시 설 비 (1 차)	10,252	4,593	44.8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교육시설 안전과	석면제거사업(공립시설비) 재 배 정 잔 액	44,805	3,943	8.8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교육시설 안전과	안전 점검 및 진단 재 배 정 잔 액	2,956	2,877	97.3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염 창 중 교 사 동 외 벽 개 선	2,421	2,377	98.1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가 락 중 본 관 화 장 실 개 선	1,761	1,701	96.6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계 획 변 경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대 명 초 본 관 동 화 장 실 개 선	1,425	1,382	96.9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동 부 교육지원청	중 곡 초 병 설 유 신 관 외 벽 개 선	1,326	1,284	96.8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동 부 교육지원청	원 목 고 본 관 동 화 장 실 개 선	1,315	1,166	88.7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당곡고 화장실개선 본관동 및 정보종합센터화장실개선	1,127	1,081	95.9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세 료 초 교 사 동 외 벽 개 선	1,051	1,050	99.9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용 곡 중 교 사 드 라 이 비 트 해 소	1,056	1,014	96.0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풍 납 중 본 관 화 장 실 개 선	1,033	998	96.5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 주1) 불용액 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주2)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제외함 “(3)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에서 별도 검토

〈표 4-20B〉 학교시설환경개선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부서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률	발 생 사 유
서 부 교육지원청	구 현 초 교 사 동 드 라 이 비 트 해 소	1,663	980	58.9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장 월 초 본 관 화 장 실 개 선	1,495	946	63.3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북 부 교육지원청	쌍 문 초 교 사 드 라 이 비 트 해 소	940	918	97.7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월 촌 중 교 사 동 화 장 실 개 선	1,840	913	49.6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용 곡 초 본 관 동 드 라 이 비 트 해 소	960	910	94.8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신 목 중 본 관 외 벽 개 선	922	894	97.0	세출예산 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계획 변경
중 부 교육지원청	청 운 중 본 관 동 드 라 이 비 트 해 소	1,451	882	60.7	공사범위 중 일부(후면 내진보강공사 시 병행추진예정)로 제외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매 현 초 교 사 동 드 라 이 비 트 해 소	900	863	95.8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오금초 승강기설치 및 교육환경개선공사(특별교부금)	880	854	97.1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계획 변경
남 부 교육지원청	영 림 중 본 관 동 드 라 이 비 트 해 소	852	825	96.9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영 도 초 본 관 동 화 장 실 개 선	908	823	90.6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교 육 시 설 안 전 과	(꿈담) 학교공간재구조화 (사립) _ 재배정잔액	942	729	77.4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사업변경(조정)을 대비한 여유분으로, 사 업변경심의(2회) 실시후발생한잔액)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명일여고 정보화센타 화 장 실 개 선	751	727	96.7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가 원 중 교 사 동 화 장 실 개 선	754	726	96.3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 주1) 불용액 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주2)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제외함 “(3)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에서 별도 검토

〈표 4-20C〉 학교시설환경개선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부서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률	발 생 사 유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개 포 고 다 목 적 강 당 외 부 창 호 개 선	738	721	97.7	세 출 예 산 절 감 계 획 에 따 른 배 정 유 보 액
서 부 교육지원청	연신중 후관동 및 본관동 외 벽 개 선	1,518	633	41.7	세 출 예 산 절 감 계 획 에 따 른 배 정 유 보 액
교육시설 관리본부	예 일 여 중 별 관 드 라 이 비 트 해 소	1,245	610	48.9	면적변경 및 예일여고와 통합 발주로 인한 잔액
교육시설 안전과	운동장환경개선(사립) _ 재 배 정 잔 액	1,206	609	50.5	세 출 예 산 절 감 계 획 에 따 른 배 정 유 보 액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반원초 본관 및 신관 화 장 실 개 선	2,278	605	26.5	세 출 예 산 절 감 계 획 에 따 른 배 정 유 보 액
중 부 교육지원청	장 충 초 운 동 장 환 경 개 선	800	586	73.3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단가 변 경 에 따 른 잔 액
중 부 교육지원청	청 구 초 남 관 동 외 부 창 호 개 선	576	559	97.2	2026년 내진보강공사와 병 행 추 진 예 정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화곡초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1,111	556	50.0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교육시설 관리본부	오류고 교사동 및 강당 화 장 실 개 선	1,425	535	37.5	설 계 검 토 후 잔 액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상 도 초 본 관 동 냉 난 방 개 선	1,325	521	39.3	세 출 예 산 절 감 계 획 에 따 른 배 정 유 보 액
교육시설 안전과	안전점검보수(기후변화대비) 시설안전인증) 비탈면보수보강 재 배 정 잔 액	658	518	78.6	세 출 예 산 절 감 계 획 에 따 른 배 정 유 보 액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공항중 교사동 가계실 소방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	528	505	95.6	세 출 예 산 절 감 계 획 에 따 른 배 정 유 보 액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석촌중 정보동및다목적강당 화 장 실 개 선	519	502	96.8	세 출 예 산 절 감 계 획 에 따 른 배 정 유 보 액

※ 주1) 불용액 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주2)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제외함 “(3)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에서 별도 검토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급식환경개선**은 예산현액(1,384억 7,400만원) 대비 9.2%, 127억 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금호초 급식시설개선**은 지하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24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요액을 편성하여 현장실사, 선행 용역 검토 등을 실시하고 '24년 10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 설계과정에서 설비 설치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구조보강을 위한 설계용역기간을 '25년 4월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된 바, 당해연도에는 공사집행이 어려워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예산현액(12억 4,300만원)의 94.4%, 11억 7,4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제출됨

■ 그러나 동 불용사례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실시되었어야 하는 현장실사, 선행용역 검토 등이 예산 배정 후 이행되어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되어, 불용액 발생사유를 예산절감액에 따른 배정유보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닌 사업집행 지연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기에 불용액 발생 사유가 보다 명확히 기재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표 4-21〉 학교급식환경개선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사업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발생사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금호초 급식시설개선	1,243	1,174	94.4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광진초 급식시설개선	1,019	988	96.9	학사일정 고려하여 '25년 공사 예정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용답초 급식시설개선	670	646	96.4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교육시설안전과	급식시설개선(사립학교) 재배정잔액	1,094	644	58.8	사업취소(사업비 부족 및 개축대상)

※ 주1) 불용액 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주2)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제외함 “(3)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에서 별도 검토

○ 학교지원과 소관 **학교신증설**은 예산현액(1,352억 3,500만원) 대비 6.4%, 86억 9,8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해누리중 모듈러 설치**는 전년도 이월액(6억 100만원)과 '24년도 예산액(2억 6,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8억 6,300만원) 대비 58.3%, 5억 300만원이 낙찰차액을 사유로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4-22〉 학교신증설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사업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발생사유
학교지원과	(가칭) 대방유 신설	4,540	4,416	97.2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학교지원과	고덕초 교실 증축	2,000	1,970	98.5	학교요청에 따른 계획 변경 (1 년 유 예)
학교지원과	해누리중 모듈러교실 설치	863	503	58.3	모듈러 교실 제작 및 설치용역 낙찰차액

※ 주1) 불용액 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주2)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제외함 “(3)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에서 별도 검토

○ 교육부의 「결산작성 통합기준」이 정하고 있는 불용액 원인별 용어설명에 따르면 **예산절감액**이란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불용액(6,916억)중 65.6%를 **예산절감액**에 따른 불용액(4,539억 3,000만원)인 것으로 제출함

- 예산부서는 기획재정부의 '24년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미추진 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지하거나 집행취소하는 것으로 각 사업부서에 안내하여 각 사업부서는 단순 집행잔액과 사업 미추진 사례를 유보하거나 불용한 것으로 확인됨

- 각 사업부서의 유보 및 불용액 또한 미배정된 예산으로서 불용사유를 **예산절감액**으로 분류하는 것이 교육부 지침에 반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절감액**을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출잔액”, “계획변경 등 미집행” 등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업까지도 **예산절감액**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중 **남사초 환경개선공사 통합감리용역비**의 경우, 예산현액(1,300만원) 전액을 지출원인행위까지 진행하고서도 이를 취소하여 불용처리하였음에도 불용 사유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업무상 착오로 인한 사업취소까지 예산절감으로 포장한 사례일 수밖에 없음

- 지출원인행위는 일종의 계약이 성립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①계약체결로 성립된 채무관계에 따라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사업을 완료하거나 ②당해년도까지 지출하지 못할 경우 사고이월을 통하여 계약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소관부서는 지급의무를 회피한 채 예산을 불용처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물론 해당사업은 소요예산 재편성과 재계약 절차를 반복하는 행정력 낭비와 사업지연까지 초래하였기에 동 불용사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례로 판단됨

- 불용액 발생사유를 **예산절감액**으로 잘못 분류한 사업들은 ①예산 운영의 성과를 과대포장하거나, ②사업부서의 예산추계 부실로 과다 편성한 예산이 절감액으로 오인되는 등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③사업부서의 사전절차 지연 및 부진으로 인해 미집행된 사업까지 일종의 면죄부를 주게 되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바,
- 결산시 불용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불용액을 감소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불용 사유를 분류함에 있어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불용액 발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오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교육사업비

- 교육사업비의 예산현액은 3조 744억 6,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454억 8,1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6,916억원)의 21.0%를 차지함
- 이중 ①ICT활용교육지원, ②방과후학교운영, ③학교급식운영, ④선거관리 ⑤정보보안관리, ⑥누리과정지원을 포함한 6개 사업은 교육사업비 불용액 (1,454억 8,100만원)의 65.0%, 945억 1,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①예산절감액이 43.6%, 412억원, ②지출잔액에 따른 불용액이 30.2%, 285억 5,800만원, ③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이 15.5%, 146억 3,100만원, ④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4%, 98억 2,100만원, ⑤낙찰차액이 0.3%, 3억 100만원으로 검토됨

〈표 4-23〉 발생사유별 불용액 현황(교육사업비)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발 생 사 유					
			① 예 산 지 절 감 액	② 출 잔 액	③ 보 조 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④ 계획변경 등집행사 유미발생	⑤ 낙 찰 차 액	예 비 비 및 기 타
합 계	2,055,255	94,519 (100.0)	41,200 (43.6)	28,558 (30.2)	14,631 (15.5)	9,821 (10.4)	301 (0.3)	-
① ICT활용교육지원	538,842	29,461 (100.0)	18,910 (64.2)	10,513 (35.7)	-	35 (0.1)	1 (0.0)	-
② 방과후학교운영	143,644	17,736 (100.0)	16,770 (94.6)	965 (5.4)	-	-	-	-
③ 학교급식운영	782,339	17,251 (100.0)	2,510 (14.6)	92 (0.5)	14,631 (84.8)	0.9 (0.1)	16 (0.1)	-
④ 선 거 관 리	58,875	14,918 (100.0)	-	14,918 (100.0)	-	-	-	-
⑤ 정보보안관리	52,723	8,914 (100.0)	3,010 (33.8)	444 (5.0)	-	5,174 (58.1)	284 (3.2)	-
⑥ 누리과정지원	478,831	6,238 (100.0)	-	1,626 (26.1)	-	4,612 (73.9)	-	-

※ 불용액 50억원 이상 세부사업으로 한정함

- ICT활용교육지원은 예산현액(5,388억 4,200만원)의 5.5%, 294억 6,100만원이 불용된 바,

〈표 4-24〉 ICT활용교육지원 세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금액 (C)	보조금 반납예정액 (D)	불용액 (E=A-B-C-D)	불용률 (E / A)
합	계	538,842	287,918	221,463	-	29,461	5.5
	AIDT교원연수질 관리체계구축(특교)	6,479	5,885	-	-	593	9.2
	AIDT적용교원 연수지원(특교)	18,342	14,742	2,708	-	891	4.9
	AI정보교육중심 학교운영(특교)	1,854	1,844	-	-	9	0.5
	SW교육지원	538	515	-	-	23	4.3
	SW교육현장안착 및활성화(특교)	5,626	5,626	-	-	-	-
	꿀박사운영	15	15	-	-	0.1	0.8
	디지털교과서개발 및활용활성화	3,198	3,152	-	-	45	1.4
	디지털기반교육혁 신지원(특교)	12,287	11,363	51	-	872	7.1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지원(특교)	81	77	-	-	3	4.5
	디지털새싹 운영(특교)	7,760	7,760	-	-	-	-
	디지털역량강화 교원연수지원(특교)	733	674	-	-	58	8.0
	사이버가정 학습운영	18	18	-	-	0.4	2.4
	서울교육포털 시스템운영	113	100	-	-	13	11.4
	서울미래 학교운영	350	350	-	-	-	-
	서울스마트교육 체험관운영	143	143	-	-	-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이용보상금	198	198	-	-	0.3	0.2
	원격교육지원	465,015	220,923	218,404	-	25,687	5.5
	원격교육지원(특교)	72	52	-	-	20	28.4
	원격수업지원 플랫폼구축	6,282	5,583	298	-	399	6.4
	인공지능(AI)국가 전략정책연수(특교)	1,413	1,315	-	-	97	6.9
	인공지능(AI) 기반융합교육	57	38	-	-	19	33.9
	찾아가는학교 연수운영(특교)	8,262	7,537	-	-	724	8.8

- 이중 원격교육지원에서 256억 8,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액이 158억 1,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98억 7,300만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Digital+벗)」 사업인 원격교육지원은 '24학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695교, 157,933대의 스마트기기 디벗을 보급하고 충전함 5,700대를 보급한 것으로

■ 지난 '23회계연도 결산 결과, 349억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년도에는 본예산으로 1,92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으로 1,986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추경 예산 규모보다 더 큰 규모를 이월(2,184억 400만원)한 것으로 확인됨

〈표 4-25〉 원격교육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2024~2022)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본 예산	추경예산	전 년 도 이월금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금액	불 용 액
2 0 2 4	192,861	198,615	34,945	465,015	220,923	218,404	25,687
2 0 2 3	277	56,726	35,382	92,388	54,581	34,945	2,861
2022 ^{주1)}	54,970	△15,009	-	39,961	2,265	35,382	2,312

※ 주1) 증액 353억 8,200만원(임차방식 : 운영비 → 구매방식 : 유형자산)
감액 △503억 9,100만원(구매방식 : 학교회계전출금 → 임차방식 : 운영비)

- 더욱이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3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349억 4,500만원 중 73.5%, 256억 8,700만원을 불용 처리한 바, 지난 '22회계연도부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회계연도중 소요예산 확보에 주력 하였으나, 결산시에는 절차이행과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부득이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재정운용 결과를 제출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4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증액 편성한 원격교육지원 내 '디지털환경조성'의 사업기간은 '24년 7월부터 '25년 5월로 명시하여, 일부 예산에 대한 이월이 전제된 것이라 하나,
- 대규모 이월 외에도 예산절감(158억 1,400만원)을 사유로 하는 불용액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98억 7,300만원)까지 발생한 것은 사업 부서가 정밀한 추계를 하지 못한 결과일 수 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방과후학교운영**은 예산현액(1,436억 4,400만원)의 12.3%, 177억 3,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불용액 중 58.2%, 103억 1,900만원이 늘봄학교운영지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표 4-26〉 방과후학교운영 세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 음 연 도 이 월 금 액 (C)	보 조 금 반납예정액 (D)	불 용 액 (E=A-B-C-D)	불 용 률 (E / A)
합	계	143,644	125,817	90	-	17,736	12.3
	늘 봄 학 교 운 영 지 원	96,540	85,590	-	-	10,950	11.3
	늘 봄 학 교 운 영 체 제 구 축 (특 교)	1,990	1,760	-	-	229	11.5
	늘봄학교프로 그 램 다 양 화 (특 교)	1,130	1,128	-	-	2	0.2
	디 지 털 혁 신 방 과 후 학 교 프 로 그 램 운 영 (특교)	31,280	25,313	90	-	5,875	18.8
	방 과 후 학 교 사 업 지 원	11,839	11,288	-	-	551	4.7
	방 과 후 학 교 지 원 센 터 운 영	294	167	-	-	126	43.0
	방 과 후 학 교 활 성 화 (특교)	570	570	-	-	-	-

- **늘봄학교운영지원**은 ①늘봄학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단기행정인력 배치 사업과 ②초1 아동 친화적인 늘봄교실 및 교사연구실 환경 개선 구축 사업으로, '24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65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예산현액의 11.3%인 109억 5,000만원이 불용된 것임

〈표 4-27〉 늘봄학교운영지원 예산,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세 부 사 업	본 예 산	추경편성	예산현액	지 출 액	불 용 액	발 생 사 유		
						① 예 산 절 감 액	② 지 출 잔 액	기 타
합 계	-	96,540	96,540	85,590	10,950	10,528	422	-
늘 봄 학 교 단기행정인력지원	-	10,660	10,660	10,030	631 (100.0)	528 (83.7)	103 (16.3)	-
늘 봄 학 교 환경개선구축비	-	85,880	85,880	75,560	10,319 (100.0)	10,000 (94.6)	319 (5.4)	-

- 서울시교육청은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인해 교육청 자체 재원 확보방안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을 설정하였고, 전체 유보액(4,669억 5,900만원)중 교육사업비는 16.1%, 749억 7,200만원을 유보하고, 시설사업비는 26.2%, 1,224억 1,900만원을 유보하여 총 42.3%, 1,973억 9,100만원에 대한 집행을 유보한 바,
- 동 사업의 경우에도 불용액(109억 5,000만원)중 105억 2,800만원이 예산유보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나,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한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에는 ‘미추진 사업 추진 중지’, ‘불요불급한 사업비 감액 및 집행 취소’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늘봄학교운영지원이 미추진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해당되어 유보한 것인지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늘봄학교의 경우, 돌봄기회의 확대, 저출생 극복 등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어 예산절감의 대상으로 일괄 적용한 것은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청이 자금 부족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나, 예산의 성질별 일괄적인 목표액 설정을 통한 예산절감보다는 세부사업의 중요도와 학교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절감의 우선 순위와 절감 규모를 정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중 교육부로부터 '24년 11월, **늘봄학교운영체제구축**(특별교부금 2억원)과 **디지털혁신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특별교부금 54억 700만원)의 경우, 예산 감액 교부를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 추경을 통해 감액 조정하지 못하여 “재원없는 불용”이 56억 700만원 발생하였음에도, 소관 부서는 동 불용 사유를 ‘예산절감액’으로 표기하고 있는 바,
 - 관련 기준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분류하고 있어 불용액 발생 사유 작성 기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28〉 늘봄학교운영체제구축, 디지털혁신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
(특별교부금)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발 생 사 유		
					① 예 절 감 액	② 산 지 출 액	기 타
합 계	33,270	27,073	90	6,105	5,607	498	
늘봄학교운영체제구축(특교)	1,990	1,760	-	229	200	29	
디지털혁신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특교)	31,280	25,313	90	5,875	5,407	469	

- **학교급식운영**은 예산현액(7,823억 3,900만원)의 2.2%, 172억 5,100만원이 불용된 바,

〈표 4-29〉 학교급식운영 세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 음 연 도 이 월 금 액 (C)	보 조 금 반납예정액 (D)	불 용 액 (E=A-B-C-D)	불 용 률 (E / A)
합	계	782,339	764,924	159	4	17,251	2.2
	급 식 종 사 자 건 강 관 리	120	119	-	-	1	1.2
	맞춤형영양식 생활교육지원	100	100	-	-	-	-
	맞춤형영양식 생활교육지원(특교)	85	85	-	-	-	-
	① 무 상 급 식	775,941	761,262	-	4	14,644	1.9
	식 생 활 교 육	69	57	-	-	12	17.8
	영 양 교 육 과 정 개 발	18	14	-	-	4	22.1
	② 학 교 급 식 기 획 운 영	5,029	2,336	159	-	2,534	50.4
	학 교 급 식 운 영 지 원	971	916	-	-	54	5.6
	학 교 급 식 위 원 회 운 영	5	4	-	-	0.3	6.0

-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소관 ①무상급식의 경우, 소관 부서는 ‘공립인건비 노사 이관과정에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사용’, ‘조리실무사 인력부족으로 인한 각종 수당 집행잔액’, ‘급격한 학생수 감소 및 예산편성단가와 실제 지원 단가(학생 수에 따른 구간별 차등지원)의 차이’ 등으로 불용액(146억 4,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하였음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3회계연도 결산에서는 '급격한 학생수 감소 및 예산편성단가와 학생수에 따른 구간별 차등지원 방식에 따라 실제 지원 단가와 차이'가 있어 549억 9,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한 바 있음

〈표 4-30〉 학교급식운영 예산집행 현황(2024~202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금액 (C)	보조금반납 예정액 (D)	불용액 (E=A-B-C-D)	불용률 (E / A)
2 0 2 4	782,339	764,924	159	4	17,251	2.2
2 0 2 3	956,263	901,271	-	2	54,990	5.8
2 0 2 2	917,637	874,030	16	79	43,509	4.7

- 동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 비율은 낮은 수준에 해당하나, 집행잔액 발생 규모가 100억원 이상에 해당되고, 지난 '23회계연도에 이어 '24회계연도 또한 유사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 매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은 예산과 결산의 차이를 비교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재정진단 과정임에도,
- 동 사업은 '급격한 학생 수 감소'라는 원론적인 불용사유를 2개 회계연도 연속하여 제출하고 있어 향후에는 실제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발생 규모를 감소시켜 한정된 세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동 사업은 매년 서울시교육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도 재원분담 비율만큼 급식비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부정확한 추계는 결국 유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음

- 실제로 '24회계연도의 경우, 서울시 일반회계 결산에서도 세부사업인 '친환경 학교급식·유치원 급식지원'에서 144억 5,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 한정성까지 잠식하는 원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②**학교급식기획운영**은 당초 2,9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4년 6월, 추가경정예산으로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사업축소 등으로 예산현액 (50억 2,900만원) 중 50.4%, 25억 3,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급식로봇도입은 '24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학교 자체 도입을 위해 급식로봇 10대 도입비 2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 관련 계획 수립 후 2차에 걸쳐 급식로봇 도입 희망학교를 모집하고 선정 검토까지 하였으나, '24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어 시범운영교에 1대만 도입하고 자체 급식로봇 도입사업(9대)은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결국 **학교급식기획운영**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50.7%, 25억 3,400만원이 불용된 바, 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사업축소라 하더라도, 현장의 사업 필요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선거관리**는 예산현액(588억 7,500만원)의 25.3%, 149억 1,800만원이 불용된 바,

-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결위('24. 8.29)로 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24년 10월 16일로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가 확정되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경비 납부를 요구받아 예산의 이용을 통해 565억 4,300만원을 확보하였고,
- 서울시와 자치구의 선거관리경비 편성분 추가 요청으로 예비비 23억 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로 교부한 것으로
- 교육감 보궐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집행잔액 149억 1,800만원을 반환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은 타 기관의 선거관리경비 납부 요구를 통해 선거 비용이 확정되는 특수성이 있고, 관련 규칙에 따라 선거일 후 80일 이내에 선거경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된 정산 잔액을 세출의 해당과목으로 반납처리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나,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 예산 규모를 확정하여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표 4-31〉 선거관리 세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 음 연 도 이 월 금 액 (C)	보 조 금 반납예정액 (D)	불 용 액 (E=A-B-C-D)	불 용 률 (E / A)
합	계	58,875	43,956	-	-	14,918	25.3
	선 거 관 리	58,875	43,956	-	-	14,918	25.3

-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에 따라 경비를 산출하여 서울시교육청에 납부 요구(565억 4,300만원)한 것으로 사료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경비를 집행하고 반납한 잔액(139억 4,100만원)이 결국 당해연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잔액 증가로 이어진 바, 정확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경비 산출이 이루어지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보안관리**는 예산현액(527억 2,300만원) 대비 16.9%, 89억 1,400만원이 불용된 것임

〈표 4-32〉 정보보안관리 세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금액 (C)	보조금 반납예정액 (D)	불용액 (E=A-B-C-D)	불용률 (E / A)
합	계	52,723	32,850	10,958	-	8,914	16.9
	K-에듀파인 및 기록관리시스템운영	1,743	1,741	-	-	1	0.1
	K - 에듀 파 인 운 영 (특 교)	1,873	1,873	-	-	-	-
	디지털인프라 지 원 (특 교)	8,783	693	2,829	-	5,260	59.9
	보 안 운 영	334	313	-	-	21	6.4
	소프트웨어(특교)	12	12	-	-	-	-
	정보시스템운영	472	433	-	-	38	8.1
	정 보 화 관 리	22,388	20,821	-	-	1,566	7.0
	정 보 화 기 획	14,431	4,409	8,128	-	1,893	13.1
	정 보 화 운 영	1,439	1,376	-	-	62	4.3
	홈페이지관리	1,244	1,174	-	-	69	5.6

- 동 사업의 불용액(89억 1,400만원)중 59.0%, 52억 6,000만원은 창의 미래교육과 소관 **디지털인프라지원(특별교부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불용사유로 제출한 바,

- 학교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개선 하기 위한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25년 2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사용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 교육부가 '25년 8월까지 서울을 포함한 7개 시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 요청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교육부에 사용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한 '25년 2월은 '24회계연도가 이미 종료된 시점이기에, 동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의 실제 발생사유가 결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나, '24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확정된 불용액의 발생사유를 '특별교부금 사업의 기간연장 신청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마치 '25년도 추경 예산 때문에 부득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써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24회계연도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25년도에도 재활용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시되어 사업부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24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소요예산 전액이 편성된 사업임에도, '24회계연도 동안 예산현액(87억 8,300만원)의 7.9%만 집행된 사실이 있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 바,

■ '25년도중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요청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더라도 사업 기간을 '25년 8월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스스로 촉박하게 제한하고 있어 예산의 실제 집행 가능성이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아교육과 소관 **누리과정지원**은 예산현액(4,788억 3,100만원) 대비 1.3%, 62억 3,8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표 4-33〉 누리과정 세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금액 (C)	보조금 반납예정액 (D)	불용액 (E=A-B-C-D)	불용률 (E / A)
합	계	478,831	472,528	-	64	6,238	1.3
	외국국적 유아학비지원	2,892	2,866	-	-	26	0.9
	유아보육료	245,826	241,214	-	-	4,612	1.9
	유아학비	228,338	226,676	-	64	1,597	0.7
	유아학비 부대경비	325	325	-	-	0.7	0.2
	저소득층유아 학비추가지원	1,447	1,444	-	-	2	0.2

- '24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이후 '24년 9월, 교육부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예산을 당초 4,507억 2,000만원에서 4,461억 800만원으로 △46억 1,200만원 감교부 통지한 바, 추가적인 추경을 통해 감액조정하지 못하여 감교부액만큼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한 사례로 판단됨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1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부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예산을 하반기에 감교부 통지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추경하지 않아 교부차액만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표 4-34〉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예산 교부현황(2024~2022)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당초내시액 (A)	예산편성액 (B)	실제교부액 (C)	교 부 차 액 (C - B)	차 액 발 생 사 유
2 0 2 4	450,720	450,720	446,108	△4,612	교육부 교부액조정 (' 2 4 . 9 . 2 3)
2 0 2 3	490,500	490,500	476,138	△14,361	교육부 교부액조정 (' 2 3 . 9 . 1)
2 0 2 2	556,340	556,340	545,400	△10,940	교육부 교부액 조정 (' 2 2 . 1 0 . 1 2)
2 0 2 1	575,077	575,077	564,077	△11,000	교육부 교부액 조정 (' 2 1 . 9 . 3)

- 기 편성된 국비가 회계연도중 교부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됨에도 예산액을 감액조정 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입결산에서는 미수납 처리되고, 세출결산에는 장부상 허수에 불과한 불용액을 발생시켜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원없는 불용'의 경우에는 회계연도중 적극적인 감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①**행정개선활동지원**(정책기획관, 동작도서관), ②**기관및학교평가관리**(중등교육과), ③**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집행률이 7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동 사업 모두 전년도보다 '24회계연도에는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수요 미달 또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을 사유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검토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학교지원과 소관 ④**시설사업운영**은 학교 이전적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을 수립하는 교육공간총괄기획 사업으로, '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51억 6,100만원)의 74.5%, 38억 4,600만원이 불용된 바,

- 소관 부서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①공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 ②이전적지 활용계획 재검토로 인해 용역 중단, ③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내용보강 필요에 따라 타당성조사 연내 수행 불가 등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이 10%대에 불과한 것은 물론, 이월액 또한 증가하고 있어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액 경정하는 방안도 적용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35〉 시설사업운영 예산집행 현황(2024~202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집 행 률 (B / A)	이 월 액 (C)	이 월 률 (C / A)	불 용 액 (D=A-B-C)	불 용 률 (D / A)
2 0 2 4	5,161	153	3.0	1,160	22.5	3,846	74.5
2 0 2 3	1,052	301	28.6	660	62.7	91	8.7
2 0 2 2	1,079	347	3.2	373	34.6	671	62.2

〈표 4-36〉 최근 3년간 집행률이 계속 70% 이하인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연 도	예 산 액	집 행		불 용		불 용 사 유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① 행정 개선 활동 지원 (정책기획관)	2024	2	0.3	15.8	1	84.2	교육갈등 관련 사안 미발생으로 인한 자문, 현장갈등 조정 컨설팅 관련 수당 집행 잔액
	2023	10	2	24.2	7	75.8	
	2022	10	0.2	2.3	10	97.7	
① 행정 개선 활동 지원 (동작도서관)	2024	6	4	64.9	2	35.1	장기휴관 및 비정규 운영으로 인한 수강생 참여율 감소
	2023	13	7	52.5	6	47.5	
	2022	13	8	60.9	5	39.1	
② 기관 및 학교 평가 관리 (중등교육과)	2024	6	3	50.7	3	49.3	5년 단위로 시행되는 특성화중학교, 예술계열 자율학교, 특목고 대상 운영성과 평가 주기 미도래
	2023	15	0.6	4.4	14	95.6	
	2022	16	9	61.1	6	38.9	
③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2024	1.5	0.5	33.2	1	66.8	나이스 연수 횟수 축소, 예산 절감
	2023	1.7	0.7	45.2	0.9	54.8	
	2022	1.7	1	56.9	0.7	43.1	
③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강서양천교육지원청)	2024	1.5	0.8	57.1	0.6	42.9	나이스 비대면, 원격교육 실시로 예산 절감
	2023	1.7	1	60.0	0.7	40.0	
	2022	1.7	1	69.3	0.5	30.7	
④ 시설사업운영 (학교지원과)	2024	5,161	153	3.0	3,846	74.5	공통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 이전적지 활용계획 재검토, 예산 절감 및 타당성조사 연내 수행 불가
	2023	1,052	301	28.6	91	8.7	
	2022	1,079	34	3.2	671	62.2	

③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총 268건, 836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4,834억 2,400만원) △412건, △3,998억 1,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5억원 이상 불용된 사업중 ①**학교시설환경개선**은 48건, 445억 3,500만원, ②**학교급식환경개선**은 2건, 41억 4,100만원, ③**기관시설유지관리**는 2건, 25억 8,100만원, ④**학교시설확충**은 2건, 25억 9,1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①**정의여고외 6교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는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액을 사유로 하여 전액 불용된 것임

■ **정의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국고보조금)의 경우 '23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된 37억 8,300만원이 '24회계연도에 불용처리된 것으로, '23회계연도에도 '22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103억 2,9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이월과 불용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4-37〉 정의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국고보조금) 결산 현황(2022~2024)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액	당해연도	계			
2 0 2 4	3,783	-	-	-	-	3,783
2 0 2 3	10,329	3,783	14,112	-	3,783	10,329
2 0 2 2	10,329	-	10,329	-	10,329	-

- 서울시교육청은 사전절차와 설계용역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비와 시설비를 포함한 총사업예산이 사업추진 경과와 상관없이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연부율 비율에 따라 사업 1년차부터 매년 분할 교부됨으로써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사전절차 및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하면 사업부서는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대규모 교부되는 경우, 교육재정의 위기나 교육재원의 부족을 설명하는데 동감할 수 없게끔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기공사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이월,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추진상황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사업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연부율 조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는 자체재원이 아닌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임에도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세입결손에 대응하여 세출 절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불용처리하고, 이를 **예산 절감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로 반납하여야 할 이른바 ‘정산 의무가 있는 경비’와 불용액에서 제외하는 **보조금 반납예정액**을 혼동하는 것으로, 불용액 분류기준에 대한 혼동을 넘어 국고보조금의 세입·세출 처리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로 오인될 수 있어 예산운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②**증산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예산현액 21억 5,800만원), **홍제초 교사 드라이비트 해소**(18억 4,000만원)의 경우, '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설계 및 공사집행이 '24년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학교 요청에 따라 2025년 겨울방학중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장애요인에 의해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가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 편성시 사전 검토와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 발생될 개연성이 높기에 향후 사업의 집행가능 여부를 현실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하고, 회계연도중 불용예상액을 적극적으로 감액조정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4-38A〉 예산현액 전액불용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부 서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불 용 액
1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① 정의여고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시설비	3,783	3,783
2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중앙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2,803	2,803
3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서 부 교 육 지 원 청	②증산초 교사동 드라이비트해소	2,158	2,158
4	기 관 시 설 유 지 관 리	교 육 시 설 안 전 과	고척도서관 그린리모델링사업	1,905	1,905
5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서 부 교 육 지 원 청	②홍제초 교사 드라이비트해소	1,840	1,840
6	학 교 시 설 확 충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인덕과학기술고 강당 검 체 육 관 시 설 비	1,591	1,591
7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강 동 송 파 교 육 지 원 청	묘곡초 교사동 외벽개선	1,460	1,460
8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강 동 송 파 교 육 지 원 청	천일중 교사동 외부창호개선	1,440	1,440
9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①대광중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시설비	1,380	1,380
10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강 서 양 천 교 육 지 원 청	목일중 급식실및학생식당 신증축	1,337	1,337
11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서울고 본관 드라이비트해소	1,224	1,224
12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①용문고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시설비	1,166	1,166
13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남 부 교 육 지 원 청	대림중 본관및정보동 외벽개선	1,071	1,071
14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강 동 송 파 교 육 지 원 청	세륜초 교사동 외벽개선	1,051	1,051
15	학 교 시 설 확 충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은평고 강당검체육관 시설비	1,000	1,000

※ 불용액 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표 4-38B〉 예산현액 전액불용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부서	사업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16	학교시설 환경개선	남부 교육지원청	신길중 운동장환경개선	1,000	1,000
17	학교시설 환경개선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용마초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1,000	1,000
18	학교시설 환경개선	북부 교육지원청	창동초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1,000	1,000
19	학교시설 환경개선	남부 교육지원청	여의도중 본관동 드라이비트해소	998	998
20	학교시설 환경개선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세륜초 교사동외부창호개선	972	972
21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관리본부	① 동성고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시설비	970	970
22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관리본부	덕성여고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936	936
23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관리본부	정의여고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907	907
24	학교시설 환경개선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해소	907	907
25	학교시설 환경개선	북부 교육지원청	신창초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900	900
26	학교시설 환경개선	중부 교육지원청	명신초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870	870
27	학교시설 환경개선	서부 교육지원청	아현산업정보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850	850
28	학교시설 환경개선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화계초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850	850
29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관리본부	① 고대부중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시설비	843	843
30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관리본부	배문고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836	836

※ 불용액 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표 4-38C〉 예산현액 전액불용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부서	사업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31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관리본부	①중앙여고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시설비	810	810
32	학교시설 환경개선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삼선중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800	800
33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관리본부	고대부고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786	786
34	학교시설 환경개선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상일초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730	730
35	학교시설 환경개선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지향초 기타사업 교사동 중연창하부벽체개선	711	711
36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관리본부	오산중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682	682
37	기관시설 유지관리	교육시설 관리본부	서대문도서관 본관동 드라이비트해소	675	675
38	학교시설 환경개선	서부 교육지원청	상지초 본관동 드라이비트해소	660	660
39	학교시설 환경개선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경인초 내진보강공사	652	652
40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관리본부	광운인공지능고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648	648
41	학교시설 환경개선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용곡초 서관동 드라이비트해소	640	640
42	학교시설 환경개선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창덕여고 교사동 교실출입문개선	632	632
43	학교시설 환경개선	동부 교육지원청	전농중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629	629
44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관리본부	한대부중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629	629
45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관리본부	남강중 본관 외벽개선	624	624

※ 불용액 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표 4-38D〉 예산현액 전액불용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부서	사업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46	학교시설 환경개선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명원초 교사동 외부창호개선	612	612
47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관리본부	송문중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608	608
48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관리본부	① 동성중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시설비	580	580
49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안전과	운동장환경개선(공립)_재배정잔액	562	562
50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관리본부	배문중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546	546
51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관리본부	한국삼육고 장애인편의시설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설치(특교잔액)	540	540
52	학교시설 환경개선	북부 교육지원청	불암초 냉난방개선	530	530
53	학교시설 환경개선	동부 교육지원청	용두초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설계비	500	500

※ 불용액 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3)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중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기타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예산의 운용부서를 이관하는 것임

○ '24회계연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생된 예산의 이체는 총 2건, 30억 9,400만원으로 제출된 바, 직전회계연도(1,662억 1,100만원) 보다 건수는 1건 증가하였으나, 이체규모는 △1,631억 1,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9〉 최근 3년간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회 계 연 도		2024	2023	2022
건	수	2	1	3
금	액	3,094	166,211	78,569
증	감 액	△ 163,116	87,641	77,792

○ '24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체내역을 검토하면, 지난 '24년 2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2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추진한 바,

- **중등교육지원과**의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및 '중등 교원 교권보호' 업무가 **초등교육지원과**로 통합 이관되어 사업예산(25억 4,400만원)이 이체되었고,
- 학교 복합화 시설 추진 기능이 **미래학교추진단**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교육 시설안전과**의 '각급학교 시설 복합화 계획 수립 및 총괄' 사업예산(3억 1,500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24년 6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24년 7월 1일자로 유보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유아교육과의 '유보통합운영지원' 업무를 유보통합추진단으로 이관하여 사업비 2억 3,500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됨

〈표 4-40〉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이 체 부 서		건 수	이 체 액	이 체 사 유
	준 부 서	받 은 부 서			
합 계			2	3,094	
1 차			1	2,859	'24. 3.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재 편	중 등 교 육 과	초 등 교 육 과		2,544	- '교육활동 보호 기능' 일원화 -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신설
	교 육 시 설 안 전 과	미 래 학 교 추 진 단		315	- '학교 복합화 시설 추진 기능' 일원화
2 차			1	235	'24. 7.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신 설	유 아 교 육 과	유 보 통 합 추 진 단		235	- '유보통합추진단'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

(4) 이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관련 법령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총칙을 통해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4년도 예산서중 「예산총칙」 제8조를 통해 ①공무원의 보수, ②기간제 근로자, 교육공무직 및 계약직교원 보수, ③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④재해대책비, ⑤반환금, ⑥학교신설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4회계연도의 경우, 총 1건, 565억 4,300만원을 이용 처리한 바, 직전 회계연도 보다(72억 4,600만원) 건수는 △1건 감소하였으나, 이용 규모는 492억 9,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4-41〉 최근 3년간 이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회 계 연 도	2024	2023	2022
건 수	1	2	1
금 액	56,543	7,246	2,600
증 감 액	49,296	4,646	2,600

- 1건의 이용사례는 지난 '24년 8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권위되어 '24년 10월 16일 교육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권위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 경비 565억 4,300만원을 확보하고자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기금전출금**에서 총무과 소관 **선거관리**로 565억 4,300만원을 이용한 것으로

〈표 4-42〉 이용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예 산 액	이 용 액		이용일자
				감	증	
재 무 활 동	내 부 거 래 지	기 금 전 출 금	268,545	△56,543	-	'24. 9.12
교 육 행 정 일	의회협력 및 선거 관리	선 거 관 리	-	-	56,543	

- 예산편성시 예상치 못한 선거 경비를 확보하고자 **재무활동**중 기금전출금의 일부를 **교육행정일반**중 선거관리로 이용한 것인 바, 관련 법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사업간 이용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년 9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비용을 납부 요청받아 정책사업간 565억 4,300만원을 이용하여 납부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경비로 426억 300만원을 집행한 후 '24년 12월, 집행잔액 139억 4,100만원을 교육청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대로 선거관리 경비 전액을 납부한 것이나, 이용된 예산액(565억 4,300만원)의 24.7%에 해당하는 139억 4,100만원이 집행잔액성 경비로 반납되었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43〉 선거관리 예산집행 현황(선거관리위원회)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 업 내 역	예 산 현 액				집 행 액 (B)	집행잔액 (C=A-B)
		본 예 산	추경1회	변 경 (이 용)	계 (A)		
선거관리	서울시선거관리 위원회 보궐선거 비 용	-	-	56,543	56,543	42,603	13,941

(5)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4회계연도의 경우, 총 41건, 219억 3,100만원이 전용된 것으로 '24회계연도 예산현액(13조 4,038억 4,100만원)의 0.2% 규모에 해당하고, 직전 회계연도(53건, 308억 3,300만원)와 비교하면 △12건, △89억 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4-44〉 최근 3년간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회 계 연 도	2024	2023	2022
건 수	41	53	51
금 액	21,931	30,833	54,561
증 감 액	△8,902	△23,728	41,184

- **조직별** 전용현황을 검토하면 24개 담당관·과·직속기관에서 41건을 전용한 것으로 체육건강예술교육과 6건(1억 5,400만원), 특수교육과 4건(2,700만원), 예산담당관 3건(19억 8,400만원) 등을 전용한 바,
 - **체육건강예술교육과**는 국립학교에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을 국립학교 전출금등으로(4건), 공립학교 지원을 위해 국립학교 전출금등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1건) 총5건, 1억 3,7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내국중에 급식로봇 설비공사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700만원 전용하였음

- **특수교육과**의 경우, 국립학교에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을 국립학교 전출금등으로 4건, 2,7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 **예산담당관**의 경우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중 학교회계전출금을 경상·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4억 5,000만원 전용하고,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에서 인건비로 15억 3,000만원, 지방공무원대체직원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법정부담금으로 4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제출됨

〈표 4-45〉 부서별 주요 전용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부	서	명	건	수	금	액				
체	육	건	강	예	술	교	육	과	6	154
특	수	교	육	과	4	27				
예	산	담	당	관	3	1,984				
유	아	교	육	과	2	4,287				
학	생	맞	춤	지	원	담	당	관	2	1,102
노	사	협	력	담	당	관	1	1,500		
교	육	시	설	안	전	과	1	11,500		

※ 부서별 전용 내역 3건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24회계연도에 발생한 전용내역을 **사업별**로 검토하면,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소관 **교육급여지원**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교육급여중 국고보조재원 예산을 교부하기 위해 동일 세부사업내에서 전용한 것으로 민간이전으로 편성한 예산중 1억 1,600만원을 보전금으로 전용하였음

〈표 4-46〉 교육급여지원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전 용 액		전 승 인 용 일
			감	증	
교 육 급 여 지 원	[320] 민 간 이 전	681	△116	-	'24. 2.20
	[310] 보 전 금	987	-	116	

- 교육부의 관련 기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전금(310)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전용 사례는 회계연도중 발생한 제도변경이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용이 아닌 편성 당시부터 예산편성 기준을 숙지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한 사례를 전용을 통해 편성 오류를 희석시킨 사례로 전용 규모의 과소를 떠나 사업부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사례로 판단됨
- 아울러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학습운영**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는 바, 학력인정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기관중 자치구 및 자치구 직속 운영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민간이전으로 편성한 예산중 1억 3,900만원을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표 4-47〉 평생학습운영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전 용 액		전 승 인 용 일
			감	증	
평 생 학 습 운 영	[3 2 0] 민 간 이 전	3,231	△139	-	'24. 4. 3
	[3 3 0] 자치단체등이전	50	-	139	

-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자치구 및 자치구 직속 운영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초 자치단체등이전(330)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예산편성 이후 전용을 통해 지침 위반요인을 해소한 사례일 수 밖에 없어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전용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부·강동송파·강서양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소관 **기관기본운영비**는 '24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 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추가 소요분을 확보하고자 운영비와 여비 총500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전용하였음

〈표 4-48〉 기관기본운영비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전 용 액		전 승 인 용 일
			감	증	
기 관 기 본 운 영 비	[2 1 0] 운 영 비	1,468	△3	-	'24.10.25 등 ^{주)}
	[2 2 0] 여 비	377	△2		
	[2 5 0] 직무수행경비	267	-	5	

※ 주) 서부: '24.10.25, 강동·송파: '24.10.11, 강서·양천: '24.10.11, 강남·서초: '24.10.21

- 동 사업은 서부·강동송파·강서양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 지방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가 추가 소요되어 '24년 10월, 전용을 결정한 사례로 확인되나,
- 지난 '23년 12월 14일, 이미 행정관리담당관에서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에 대해 안내한 바 있어, 해당 기관은 소요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요청하여야 함에도 일체의 편성 요청 없이 전용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한 사례로 판단됨
- 다만, 사업부서로서는 '24년 1월 1일자 정원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특정 업무경비 즉, 필수경비를 확보하였고, 전용 규모 또한 5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되어 전용에 따른 문제 요인이 없다는 의견일 수 있으나,
-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23년 12월 15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의결할 당시에는 정원조정으로 증가되는 특정업무경비까지 미리 포함시켜 의결한 사실이 없음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또한 ①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전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지방 의회의 당초 의결취지와 다름에도 전용으로 재원을 확보한 것은 전용 제도의 운영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일 수밖에 없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계약제근로자인건비**는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확대에 따라 학교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교육공무원인건비**(사립학교 공무원인건비지원) 학교회계전출금에서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장애인근로자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15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제출함

〈표 4-00〉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전 용 액		전 용 인 일
			감	증	
교 육 공 무 직 원 인 건 비	[6 2 0] 학교회계전출금	111,682	△1,500	-	'24.11.27
계 약 제 근 로 자 인 건 비	[6 2 0] 학교회계전출금	12,354	-	1,500	

- 동 사업은 매월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사업부서에서는 '24년 하반기에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부족한 예산을 세부사업인 **교육공무원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세부사업인 **계약제근로자인건비**로 전용하여 확보한 것이라고 하나,
- '24년 1월 현재, 공립학교 장애인 근로자 수는 973명으로 전년 770명보다 26.4% 증가하였고, 4월까지 증가세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사업처럼 대규모의 예산 증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추경을 통해 추가 소요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시설환경개선**은 예산 부족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하지 못한 공립학교 10교 14동에 대한 내진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설계지연 등으로 공사가 연기된 사립학교의 내진보강 공사비(학교회계전출금)중 115억원을 건설비로 전용한 것으로 제출되었음

〈표 4-49〉 학교시설환경개선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전 용 액		전 용 인 일
			감	증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6 2 0] 학교회계전출금	121,302	△11,500	-	'24.12. 9
	[4 2 0] 건 설 비	146,884	-	11,500	

- '24년도의 경우, 내진보강사업을 대상 학교별로 편성하지 않고, 공립학교 건설비(420)와 사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620)으로 구분하여 포괄사업비로 편성한 바,
- 내진보강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겨울방학에 주로 추진하고 설계완료된 사업은 공사발주 직전인 11~12월에 공사비를 재배정하고 있음
- 전용 사례의 경우, '24년도 겨울방학에 공사 추진이 예정된 일부 공립학교에서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사업집행이 저조한 내진보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비 불용액을 줄이고자 설계지연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립학교 내진보강 공사비를 공립학교 공사비로 전용한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은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자 주로 겨울방학에 추진하고 있어 대상 학교와 공사비를 11~12월경에 확정하게 되나, 동 사례와 같이 대규모의 전용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과목이라 하여도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기 보다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예산담당관 소관 **지방공무원인건비**는 지방공무원인건비 보수 부족분을 지방공무원인건비 법정부담금에서 충당하고자 민간이전 15억 3,0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한 것으로

〈표 4-50〉 지방공무원인건비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전 용 액		전 용 승 인 일
			감	증	
지 방 공 무 원 인 건 비	[3 2 0] 민 간 이 전	117,912	△1,530	-	'24.12.19
	[1 1 0] 인 건 비	436,503	-	1,530	

- 지난 '24년 6월, 관련 법령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4년 10월 1일자 9급 공무원 97명이 신규 임용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이 1년 단축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동일 세부사업내 예산과목간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표 4-51〉 주요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 용 액		전 용 사 유	전용 일자
			감	증		
합 계			△20,427	20,427		
방 과 후 학 교 운 영	자치단체 등 이 전	2,560	△720	-	학교 밖 기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생수송용 차량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등이전(330)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운영비(210)목 및 학교회계전출금(620)목으로 전용	'24. 8.20
	운 영 비	945	-	60		
	학교회계 전 출 금	48,739	-	660		
교 육 급 여 지 원	보 전 금	987	△985	-	교육활동지원비소급분의 경우, 한국장학재단(교육급여 바우처 운영 지정기관)에 교부하고 재단에서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방법이 변경되어('24. 6.) 보전금(310)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자치단체등이전(330)목으로 전용	'24. 8.26
	자치단체 등 이 전	22,961	-	985		
누 리 과 정 지 원	자치단체 등 이 전	250,343	△4,192	-	교육부 2024년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 시도별 예산 조정 결과에 따라 유아학비의 증액, 보육료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여 자치단체등이전(330)목을 학교회계전출금(620)목으로 전용	'24.11.12
	학교회계 전 출 금	228,581	-	4,192		
교 육 공 무 직원인건비	학교회계 전 출 금	111,682	△1,500	-	학교 장애인근로자 채용이 증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인건비(사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620)목으로 편성한 예산 일부를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장애인근로자) 학교회계전출금(620)목으로 전용	'24.11.27
계약제근로자 인 건 비	학교회계 전 출 금	12,354	-	1,500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학교회계 전 출 금	121,302	△11,500	-	공립학교 내진보강 공사 예산이 부족하여 설계지연으로 공사가 연기된 일부 사립학교의 내진보강 공사비 학교회계전출금(620)목을 건설비(420)목으로 전용	'24.12. 9
	건 설 비	146,884	-	11,500		
지방공무원 인 건 비	민간이전	117,912	△1,530	-	지방공무원인건비 추가 소요 발생으로 지방공무원인건비 보수 부족분을 법정부담금 예산에서 충당하고자 민간이전(320)목을 인건비(110)목으로 전용	'24.12.19
	인 건 비	436,503	-	1,530		

※ 전용액 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아울러 **ICT활용교육지원** 외 8건은 최근 3년 연속 전용된 세부사업으로 매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에서 동일 사업의 전용이 연례화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4회계연도에도 반복적으로 전용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표 4-52〉 최근 3년 연속 전용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2024	2023	2022
1	교수학습활동지원	학 교 정 보 화	ICT활용교육지원	71	9,758	31,140
2	교수학습활동지원	특 별 활 동 지 원	각 종 체 육 활 동	34	56	43
3	인적자원운용	교 직 원 인 사	교 원 인 사 관 리	23	24	21
4	기 관 운 영	기 본 운 영 비	기 관 기 본 운 영 비	17	39	8
5	교 육 행 정 일 반	특별교육재정수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00	200	222
6	교수학습활동지원	교 육 과 정 운 영	특색교육과정운영	16	1,598	138
7	교수학습활동지원	특 수 교 육	특 수 교 육 운 영	5	119	245
8	보 건 급 식	보 건 관 리	학 교 보 건 관 리	82	87	18,273
9	학교시설여건개선	학 교 시 설 개 선	학교시설환경개선	11,500	880	288

-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전용이 예산이 의결된 이후 행정편의 및 용이한 집행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수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용 사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명시이월 관련

1) 명시이월 일반 현황

- 관련 법령은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명시이월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13조 4,038억 4,100만원 중 0.4%, 583억 6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직전 회계연도(2,634억 9,100만원)보다 △77.8%, △2,051억 8,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된 바,

〈표 4-53〉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 산 현 액 (A)	명 시 이 월			전 년 대 비	
		건 수	금 액 (B)	비 율 (C=B/A)	증 감 액 (D)	증 감 륜 * (E=D/B)
2 0 2 4	13,403,841	88	58,306	0.4	△205,185	△77.8
2 0 2 3	14,388,006	520	263,491	1.8	△62,415	△19.1
2 0 2 2	14,929,457	677	325,906	2.1	253,457	349.8

* 증감률[E = D / (전년도)B]

-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조정에 대응하고자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2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중 일부만 명시이월 승인요청함으로써 명시이월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명시이월은 91건, 628억 700만원을 승인하였으나,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승인된 내역보다 △3건, △45억 100만원 감소된 88건, 583억 600만원이 실제 명시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표 4-54〉 명시이월 승인 및 결산 결과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승 인 (A)	결 산 (B)	증 감 (B - A)
건	수	91	88	△3
금	액	62,807	58,306	△4,501

- '25년도 본예산안에 포함시켜 승인요청한 명시이월중 **목일중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와 **샌드위치패널 해소**(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경우, 당초 내진 보강 간섭공종을 사유로 명시이월을 승인요청하였으나, 추진일정을 조정하고 공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실제 명시이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이월이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까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포함시켜 우리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심사기간에 해당 사업까지 이월승인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비효율을 발생시킨 사례에 해당되어 향후에는 명시이월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55〉 명시이월 승인이후 변경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기관(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A)	승 인 된 명시이월액 (B)	이월확정된 명시이월액 (C)	차 액 (C - B)
1	강 서 양 천 교 육 지 원 청	목일중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1,400	1,357	0	△1,357
2	강 서 양 천 교 육 지 원 청	목일중 교사동 샌드위치패널 해소	589	568	0	△568
3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개포도서관 건립사업 시설비(특교잔액)	4	4	0	△4

※ 자료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2) 발생사유별 주요 명시이월

- 명시이월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①**사업추진시 장애발생**이 275억 8,800만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583억 600만원)의 47.3%에 해당하며 ②**사업추진기간 부족**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28.0%, 163억 7,700만원, ③**기타**는 21.0%, 122억 8,200만원, ④**사업비부족**은 3.5%, 20억 5,600만원으로 제출되었음

〈표 4-56〉 명시이월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총 계	①사업추진시 장애 발생	② 사업추진 기간 부족	③ 기 타	④사업비부족
건 수	88	16	30	32	10
이 월 액	58,306	27,588	16,377	12,282	2,056
구 성 비	100.0	47.3	28.0	21.0	3.5

※ 자료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 **사업추진시 장애발생**으로 인한 명시이월은 16건, 275억 8,800만원으로, **개포도서관 공공도서관 환경개선**을 포함한 5개 사업은 10억원 이상 명시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표 4-57〉 사업추진시 장애발생으로 인한 명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재 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예산현액 (A)	이 월 액 (B)	이월률 (B/A)
1	기초전입금	교육시설관리본부	개포도서관 공공도서관 환경개선	12,100	12,100	100.0
2	일반재원	남부교육지원청	대 방 초 별 관 동 증 개 축	7,880	7,760	98.5
3	특별교부금	학 교 지 원 과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물품 구입비	1,366	1,246	91.2
4	일반재원	북부교육지원청	효문고 강당검체육관 시설비	1,014	1,010	99.6
5	일반재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그 린 스 마 트 스 쿨 (당 곡 초 모 들 러 임 차 료)	1,000	1,000	100.0

※ 명시이월액 10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대방초 별관동 증개축**(남부교육지원청)은 예산현액 78억 8,000만원중 77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대방초 인근 신길재개발촉진구역 개발에 따라 초등학생 배치를 위하여 별관동을 증개축하는 사업이나, 별관동에 대방초병설유치원이 추가됨에 따라 설계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연도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확인됨

- 대방초병설유치원은 당초 (가칭)서울대방유치원이라는 단설유치원으로서 별도 건물로 추진되었으나, '24년 8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인근에 (가칭)서울신길유치원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가칭)서울대방유치원을 대방초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라는 심의결과에 따라 단설에서 병설로 변경하고자 (가칭)서울대방유치원 신설을 취소하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24년 10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25년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였으며 동 내용은 삭제하고 수정가결한 것으로 확인됨
- 이로 인해 **대방초 별관동 증개축**은 (가칭)서울대방유치원의 설립 등 변동요인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이미 4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설계완료 후 시설비가 집행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5년도로 이월된 예산 또한 '26년도로 재이월될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은 30건, 163억 7,700만원으로, 그중 **그린스마트스쿨(오류초 시설비)**를 포함한 10억원 이상 명시이월은 4건인 것으로 확인됨

〈표 4-58〉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재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1	일반재원	남부교육지원청	그린스마트스쿨(오류초 시설비)	4,000	3,100	77.5
2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중앙여중 강당겸체육관 시설비	2,633	2,633	100.0
3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선일초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	1,355	1,355	100.0
4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선일여고 본관1,2동 화장실 개선	1,117	1,117	100.0

※ 명시이월액 10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선일초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와 **선일여고 본관1,2동 화장실 개선**은 내진보강 간접공종을 이유로 하여 명시이월한 것으로, 내진보강 공사와 연계되거나 이를 이유로 공사진행이 연기된 사업은 16건인 것으로 확인됨
- 학교시설 공사중 ‘드라이비트 해소, 외벽개선, 외부창호 개선’의 경우, 내진보강사업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높아 해당 사업은 예산 편성시 내진보강 공사유무를 검토하여야 하고,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공사 또한 내진보강공사와 간접되는지 일정 및 공사 범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에도 **선일초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를 포함한 16건은 예산현액(75억 9,600만원) 99.5%, 75억 6,200만원이 명시이월된 바,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집행 부진을 만회하는 수단으로 명시이월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향후 내진보강사업과 연계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사전조사와 총괄부서에 보고하는 절차를 매뉴얼화 함으로써 사업추진기간 부족을 사유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59〉 내진보강사업을 이유로 한 명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재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합 계				7,596	7,562	99.5
1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선일초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	1,355	1,355	100.0
2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선일여고 본관1,2동 화장실 개선	1,117	1,117	100.0
3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매그넷고 동일화관 외부창호 개선	864	864	100.0
4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동천학교 교사동 화장실 개선	681	681	100.0
5	일반재원	중부교육지원청	원효초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	560	529	94.6
6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동천학교 급식실 전면개선(환기)	450	450	100.0
7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숙명여고 강당 안전시설 개선	450	450	100.0
8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성남고 유도장 샌드위치패널 해소	399	399	100.0
9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동천학교 교사동 방수 공사	325	325	100.0
10	특별교부금	교육시설관리본부	대경중 신관동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270	270	100.0
11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대경생활과학고 운동장 환경 개선	267	267	100.0
12	일반재원	중부교육지원청	원효초 정보센터동 드라이비트 해소	260	256	98.8
13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우신중 본관동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256	256	100.0
14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동구여중 렉산시설 개선	150	150	100.0
15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숙명여중 강당 누수위험시설 개선	110	110	100.0
16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배화여중 복도 벽체시설 개선	80	80	100.0

※ 자료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 **기타**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은 **노후교사개축(신남초 증개축 시설비)**를 포함하여 32건, 122억 8,200만원으로 제출된 바, **송곡고 정보센터동 드라이비트 해소**(교육시설관리본부)는 겨울공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 노후화로 외벽 결로가 우려되어 학교가 공사연기를 요청하여 명시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표 4-60〉 기타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재 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예산현액 (A)	이 월 액 (B)	이월률 (B/A)
1	일반재원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노후교사개축(신남초 증개축 시설비)	6,200	2,078	33.5
2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송곡고 정보센터동 드라이비트 해소	1,455	1,455	100.0
3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중 앙 여 고 교 사 동 석 면 제 거	1,360	1,360	100.0
4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중 앙 여 고 본 관 외 벽 개 선	1,114	1,114	100.0
5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중 앙 여 고 본 관 외 부 창 호 개 선	1,044	1,044	100.0

※ 명시이월액 10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사업비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된 내역(10건, 20억 5,600만원)은 **상문고 운동장 환경개선**을 포함하여 모두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시설사업비(학교시설 환경개선)로,

- **선일빅데이터고 본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경우, 학교에 교부하는 교육청의 산출기준 금액과 실제 사립학교에서 설계한 공사금액이 상이하여 '25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25년도중 집행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관부서는 학교시설공사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61〉 사업비부족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재 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예산현액 (A)	이 월 액 (B)	이월률 (B/A)
1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상 문 고 운 동 장 환 경 개 선	330	330	100.0
2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선 일 빅 데 이 터 고 본 관 치 장 애 인 편 의 시 설 설 치	310	310	100.0
3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양 천 고 교 사 동 치 장 애 인 편 의 시 설 설 치	296	296	100.0
4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광 영 여 고 본 관 동 치 장 애 인 편 의 시 설 설 치	275	275	100.0
5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명 덕 여 중 본 관 동 치 장 애 인 편 의 시 설 설 치	275	275	100.0
6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중 산 고 통 행 로 안 전 시 설 개 선	155	155	100.0
7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은광여고 강당, 목련관 및 카네이션관 기 계 실 소 방 설 비 개 선	126	115	91.9
8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금 성 초 본 관 동 벽 체 샌 드 위 치 패 널 해 소	110	110	100.0
9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강 동 고 복 도 벽 체 시 설 개 선	100	100	100.0
10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상 일 여 고 체 육 관 계 시 설 개 선	90	90	100.0

※ 자료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7) 사고이월 관련

1) 사고이월 현황

- 관련 법령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등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24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예산현액(13조 4,038억 4,100만원) 대비 4.9%, 6,597억 7,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5,199억 9,700만원) 보다 사고이월 건수는 △516건 감소하고, 사고이월액은 1,397억 8,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된 바,

〈표 4-62〉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사 고 이 월			
	금 액 (A)	전 년 대 비 증 감 액	건 수	금 액 (B)	비 율 (C=B/A)	전 년 대 비 증 감 액
2 0 2 4	13,403,841	△984,166	958	659,777	4.9	139,780
2 0 2 3	14,388,006	△541,451	1,474	519,997	3.6	243,760
2 0 2 2	14,929,457	2,767,010	1,127	276,237	1.8	52,561

- 예산현액이 직전회계연도 보다 감소(△9,841억 6,600만원)하였음에도 사고이월 규모가 1,397억 8,000만원 증가한 것은 '24회계연도에는 전체 사고이월액(6,597억 7,700만원)의 32.1%를 차지하는 **디벳 환경 구축**에서 2,120억 7,8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전체 사고이월 발생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표 4-63〉 디벳 환경 구축 관련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재원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 / A)
일반재원	창의미래교육과 디벳 환경 구축	258,329	212,078	82.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 아울러 시설사업비의 경우, 사고이월액이 직전회계연도보다 감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시설사업비 편성규모(1조 1,301억 2,600만원)가 직전회계연도(1조 5,333억 2,700만원)보다 △26.2%, △4,032억 100만원 감소하여 시설사업비의 사고이월액도 △867억 2,600만원 감소한 것으로써 편성된 시설사업비 대비 사고이월액은 직전회계연도(32.7%)보다 4.6%p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4-64〉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전체 시설사업비		전체 사고이월액	시설사업비 중 사고이월액			
	금액 (A)	전년대비 증감액		건수	금액 (B)	비율 (C=B/A)	전년대비 증감액
2024	1,130,126	△403,201	659,777	778	421,764	37.3	△86,726
2023	1,533,327	196,051	519,997	1,360	508,490	32.7	252,292
2022	1,337,276	△62,379	276,237	1,024	256,198	19.1	39,19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06('23. 4.21)

2) 발생사유별 주요 사고이월

- 사고이월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⑤**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추진**이 전체 사고이월액(6,597억 7,700만원)의 40.4%, 2,662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①**계약기간 미도래** 2,286억 5,400만원(34.7%), ②**추경편성 사업** 1,323억 8,400만원(20.1%), ④**사업추진중 장애발생** 166억 3,300만원(2.5%), ⑥**기타** 148억 1,600만원(2.2%), ③**사전절차 지연** 10억 2,000만원(0.2%) 순으로 확인됨

〈표 4-65〉 발생사유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총 계	① 계약기간 미도래	② 추경편성 사업	③ 사전절차 지연	④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⑤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추진	⑥ 기타
건 수	958	358	47	6	21	480	46
이월액	659,777	228,654	132,384	1,020	16,633	266,269	14,816
구성비	100.0	34.7	20.1	0.2	2.5	40.4	2.2

-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추진**에 따른 사고이월은 480건, 2,662억 6,900만원으로 제출된 바,
- 동 사유로 20억원 이상 사고이월된 사업은 23건이며, 그중 내진보강사업이 7건(426억 5,900만원), 석면제거사업이 8건(363억 700만원), 급식실 환기개선이 6건(176억 4,300만원), 기타 2건(72억 6,300만원)인 것으로 검토됨

〈표 4-66〉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추진에 따른 사고이월 내역(A)

(단위 : 백만원, %)

구분	재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합 계 (23 건)				144,696	103,874	71.7
내진보강사업 (7 건)				52,698	42,659	80.9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내진보강사업(남부)	10,984	9,945	90.5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내진보강사업(강남서초)	9,358	8,499	90.8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내진보강사업(북부)	8,989	8,450	94.0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내진보강사업(강서양천)	9,381	6,547	69.8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내진보강사업(서부)	5,901	3,259	55.2
	특별교부금	교육시설안전과	내진보강사업(강동송파)	3,330	3,256	97.8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내진보강사업(강동송파)	4,753	2,701	56.8
석면제거 (8 건)				64,490	36,307	56.3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사업(강동송파)	12,994	10,183	78.4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사업(남부)	8,582	4,804	56.0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사업(강남서초)	5,337	4,643	87.0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사업(성북강북)	9,821	4,515	46.0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사업(중부)	9,740	3,779	38.8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사업(동부)	8,404	3,119	37.1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사업(강남서초)	6,070	2,978	49.1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사업(성동광진)	3,539	2,282	64.5
급식실 환기개선 (6 건)				19,542	17,643	90.2
	일반재원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급식실환기개선(전면)	4,223	4,058	96.1
	일반재원	남부교육지원청	급식실환기개선(전면)	4,017	3,700	92.1
	일반재원	동부교육지원청	급식실환기개선(전면)	3,583	3,137	87.6
	일반재원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급식실환기개선(전면)	2,545	2,459	96.6
	일반재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급식실환기개선(전면)	2,537	2,238	88.2
	일반재원	북부교육지원청	급식실환기개선(전면)	2,635	2,049	77.7
기 타 (2 건)				7,964	7,263	91.2
	일반재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상도유 노후교사개축	5,000	4,299	86.0
	일반재원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장위초 수영장시설개선공사	2,964	2,963	100.0

※ 사고이월액 20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내진보강사업은 예산현액(617억 8,400만원) 대비 78.0%, 482억 1,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제출되었음

〈표 4-67〉 내진보강사업^{주1)} 관련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주2)}	이월률
내진보강사업	61,784	11,663	48,212	78.0

※ 주1) '24년도 사고이월 발생 사업에 한정

주2) 100만원이상 발생 사업 모두 포함하여 <표4-54>의 이월액과 다름

- 서울시교육청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진보강사업을 위하여 '29년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내진보강 중장기 및 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 '24년도의 경우, 예산현액 617억 8,400만원중 116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학사일정에 따른 학교 측의 요구로 482억 1,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①내진성능평가 및 설계용역이 사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②공정의 특성상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방학 기간에 추진될 수 밖에 없으며, ③내진보강사업과 연계되는 드라이비트 해소 및 외벽개선 공사 등이 포함될 경우 추진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월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은 매년 동일한 사유로 대규모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특히 '29년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에 추진해야하는 물량과 예산규모가 확대될 수 밖에 없으나, 집행가능 물량에 한계가 있어, 물량 해소시까지 이월액 발생은 계속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이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거나 간접공종이 누락되는 사례처럼 사업부서의 업무부진에 따라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에, 매 년도 사업 계획 수립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실시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실제 집행가능한 물량을 산출하여 연간 소요액을 한정하여 편성하는 합리적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은 358건, 2,286억 5,400만원인 바,

- 동 사유로 20억원 이상 사고이월된 사업은 14건이며, ICT 활용교육 지원 4건(2,171억 9,400만원), 학교시설환경개선 4건(321억 100만원), 학교 신증설 2건(109억 7,600만원), 기관시설유지관리 2건(94억 900만원), 정보보안관리 2건(64억 6,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표 4-68〉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재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 / A)
합 계 (14 건)				335,411	274,266	81.7
ICT 활용교육 지원 (4 건)				257,899	217,194	84.2
	일반재원	창의미래교육과	디벗 환경 구축	119,325	118,824	99.6
	일반재원	창의미래교육과	디벗 환경 구축	122,203	87,491	71.6
	일반재원	창의미래교육과	디벗 환경 구축	8,821	4,561	51.7
	일반재원	창의미래교육과	2025학년도 디벗 양품화	7,548	6,317	83.7
학교시설환경개선 (4 건)				46,669	32,101	68.7
	일반재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둔촌초 그린스마트스쿨	15,500	11,895	76.7
	일반재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위례초 그린스마트스쿨	19,900	14,419	72.4
	일반재원	서부교육지원청	역촌유 노후교사개축 시설비	4,086	3,503	85.7
	일반재원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종암중 시설비	7,182	2,282	31.8
학교신증설 (2 건)				11,852	10,976	92.6
	일반재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가칭)산빛초 신설(토지매입비)	7,560	6,801	90.0
	일반재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신암초 병설유치원 증축	2,292	2,290	99.9
기관시설유지관리 (2 건)				10,285	9,409	91.4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강서도서관 가양분관 설립	7,714	6,909	89.6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학생교육원(대형) 실내교육장 증축	2,570	2,500	97.3
정보보안관리 (2 건)				10,704	6,469	60.4
	일반재원	창의미래교육과	학교정보화지원체계 운영지원사업	5,800	3,274	56.5
	일반재원	창의미래교육과	학교정보화지원체계 운영지원사업	4,904	3,194	65.1

※ 사고이월액 20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디бет 환경 구축**(창의미래교육과)의 경우, 예산현액(2,583억 2,900만원)의 82.1%, 2,120억 7,8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으로 '24회계연도 전체 사고이월액(6,597억 7,700만원)의 32.1%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됨

〈표 4-69〉 디бет 환경 구축 관련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재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예산 구분
합 계 (4 건)			258,329	212,078	82.1	-
일반재원	창의미래교육과	디бет 환경 구축(기기 구입)	119,325	118,824	99.6	1회 추경
일반재원	창의미래교육과	디 벳 환 경 구 축	122,203	87,491	71.6	본 예산
일반재원	창의미래교육과	디бет 환경 구축(충전함 구입)	8,821	4,561	51.7	본 예산
일반재원	창의미래교육과	디бет 환경 구축(충전함 구입)	7,978	1,201	15.1	1회 추경

※ 사고이월액 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디бет 환경 구축은 기기 및 충전함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원가조사, 일상감사, 계약심의위원회 등 사업규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와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계약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되나,
- '24년도 본예산 당시의 사업별 설명서에는 '24년 1월부터 '25년 4월까지로 이행기간을 기재하고, '24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는 '24년 6월부터 '25년 5월까지로 이행기간을 기재하고 있어, 이미 본예산은 물론 추경예산 제출 시점부터 이월을 전제한 것으로 확인됨

- 더욱이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비 이월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지난 '22년도부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표 4-70〉 디벗 환경 구축 관련 결산 현황(2022~2024)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주 1)				지 출 액	다 음 도 이 월 액	이 월 률
		전 년 도 이 월 액	본 예 산	추 경 증 감 액	계			
2024	디벗 환경 구축	32,423	189,889	127,305	349,617	114,419	212,078 (사고이월)	82.1
2023	디벗 환경 구축	35,382	-	51,277	86,659	52,161	32,423 (명시이월)	63.3
2022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	-	35,382	35,382	0	35,382 (명시이월)	100.0

※ 주1) '디벗 환경 구축' 사업 모두 포함하여 <표4-69>의 예산현액과 다름

※ 자료근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 이월액은 전용이나 변경할 수 없고 예산현액으로만 관리되는 만큼 동 사업의 경우처럼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되며 결국 세출재원의 한정성에 경직성까지 더하여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업부서는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인 예산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일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둔촌초와 위례초 그린스마트스쿨**은 '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여 노후교사를 개축하는 장기계속공사 사업으로 '24회계연도에는 준공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사고이월한 것이나, '25년 3월 준공에 따라 현재 준공정산이 진행중인 바,

■ 둔촌초 그린스마트스쿨은 예산현액(155억원)중 35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76.7%, 118억 9,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 위례초 그린스마트스쿨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79억원과 본예산 편성액 120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199억원)중 54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72.4%, 144억 1,9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확인됨

〈표 4-71〉 그린스마트스쿨(둔촌초 및 위례초) 시설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사 고 이 월 액	이월률
	본 예산	추 경 1	추 경 2	증 감 액 (이월)	계			
둔 촌 초 그 린 스 마 트 스 쿨	15,500	-	-	-	15,500	3,588	11,895	76.7
위 려 초 그 린 스 마 트 스 쿨	12,000	-	-	7,900	19,900	5,475	14,419	72.4

○ **추경편성사업**을 이유로 한 사고이월은 47건으로, 예산현액(1,411억 1,000만원)중 1,323억 8,4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Wee센터운영 건설비와 유형자산**(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남서울중학교 내에 있는 관악밝음이랑Wee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예산현액(2억원)의 90.9%, 1억 8,1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수하고,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겨울방학기간인 '25년 1월부터 '25년 2월까지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됨

〈표 4-72〉 추경편성 사업으로 인한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재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 / A)
합 계			200	181	90.9
일반재원	동작관악청 교육지원청	W e e 센터 운영 건설비	162	144	89.2
일반재원	동작관악청 교육지원청	W e e 센터 운영 유형자산	37	37	98.4

- 다만, 동 사업은 '24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결산을 위해 제출된 자료에는 사고이월 사유를 '추경편성 사업'으로 작성하며 예산편성시기는 '본예산'으로 부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집행액의 경우에도 123만원을 지출한 것이나 지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검토하는데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됨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비교할 때 회계연도 중 예산집행이 가능한 기간이 더욱 제한적이며, 별도의 추경안이 추가적으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경정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일정 등을 현실적으로 전망하여 회계연도중 집행이 확실시되는 소요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중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21건, 166억 3,300만원이 발생되었고, 사고이월액이 5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3건, 148억 2,900만원으로 확인됨

〈표 4-73〉 사업추진중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재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합 계 (3 건)			17,087	14,829	86.7
일반재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가칭) 산빛초 신설	15,000	13,267	88.5
일반재원	동교육지원부청	면중초 시설비	1,400	958	68.4
일반재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체육고 수영장방수공사	687	603	87.8

※ 사고이월액 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가칭)산빛초 신설**(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경우, 예산현액(150억원)중 88.5%, 132억 6,700만원이 사업추진중 장애발생을 사유로 하여 사고이월된 바,

- 사업추진중 공사현장의 토양오염이 발견됨에 따라 오염토 정화 및 관련 조치를 위해 '24년 11월, 공사를 중지하고, '25년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오염토 반출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조사결과 보고를 접수받음에 따라 당초 '25년 6월로 예정되었던 준공기한이 '25년 12월로 연기되어 변경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분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이 장애요인 발생으로 인해 사고이월되었기에 공사가 지연되면 다음 2차분 공사까지 순연되고, 이월된 사업비 또한 재이월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업부서는 변경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을 인식하여 회계연도 내에 이월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중단이나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 예산의 이월은 ①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일 수 있고, ②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사정변경이 발생하더라도 현액으로 관리되어 감추경할 수 없으며 ③다음연도의 가용재원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재원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규모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교육부가 '23년도부터 이월액과 불용액의 발생비율에 따라 다다음연도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본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집행 효율화 항목에는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 '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발생한 사고이월액을 고려하면 향후 교부될 보통교부금 감액통보가 예상되고 있어 재정 규모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재정여건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 편성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 이행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며, 집행불가 사업의 경우 추경시 삭감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이월액 확정 기한 미준수 사례

○ 교육부의 관련 기준은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즉 1월 10일 까지 이월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더욱이 관련 기준과 규칙에는 확정기한(1월 10일)이 경과한 이후 이월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법정기한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25년 1월 20일에서야 사고이월 예산을 확정하였고,
- 확정 이후에도 사고이월이 누락된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추가요청에 따라 사고이월액을 수정하여 1월 24일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됨

〈표 4-74〉 사고이월액 확정 이후 사고이월을 추가한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번	소 부 관 서	사 업 명	예산현액 (A)	원안행위액 (B=C+D)	지출액 (C)	사고이월액 (D)	불용액 (D=A-B)
1	진로직업 교육과	해외창의도시탐방	110	89	62	26	2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748('25. 1.24)

○ 아울러 교육부가 관련 기준을 통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액을 확정”하라는 내용을 명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서울시교육청은 사고이월액을 모두 법정 기한을 경과하여 확정된 것으로 확인됨

〈표 4-75〉 각 회계연도별 사고이월 확정일 내역(2021~2024)

회 계 연 도	확 정 일	수 정 요 청 일	수 정 확 정 일	비 고
2024	'24. 1. 20	'24. 1. 24	'24. 1. 24	
2023	'24. 1. 18	-	-	
2022	'23. 1. 18	'23. 1. 20	'23. 1. 26	
2021	'22. 1. 17	-	-	

○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로서는 실제 지출된 예산규모를 반영하여 이월액을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이후에도 누락된 이월예산을 추가하여 정정하는 것은 결산의 정합성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 관련 규칙과 기준이 회계연도 종료 이후 10일 이내에 이월액을 “확정”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최대 10일 간 지출액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월예산의 규모를 정확히 확정하라는 취지임에도
- 주어진 기간(최대 10일)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지출액 등을 파악하고 이월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기준과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인 것은 물론 회계관리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내용도 경시하는 행태일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8) 순세계잉여금 관련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및 지방채 상환을 제외한 잉여금을 의미함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965억 1,7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직전회계연도(7,632억 600만원)보다 △61.1%, △4,666억 8,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표 4-76〉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순 세 계 잉 여 금			다 음 연 도 예 산 반 영		
	금 액 (A)	전 년 대 비		본 예 산		추 경 예 산 (예 정)
		증감액(B)	비율(B/A)	금 액 (C)	비율(C/A)	
2024	296,517	△466,689	△61.1	13,525	4.5	282,992
2023	763,206	△558,224	△42.2	61,451	8.0	701,755
2022	1,321,430	863,222	188.3	1,385,344	104.8	△63,914

-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13조 4,038억 4,100만원)보다 △3,950억 8,300만원 감소한 13조 87억 5,800만원이 수납되었고,
 -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예산현액(13조 4,038억 4,100만원) 보다 △1조 4,103억 3,300만원 감소한 11조 9,935억 7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됨
- 세입결산액(13조 87억 5,8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11조 9,935억 700만원)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1조 152억 5,0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조 5,480억 1,800만원) 보다 △5,327억 6,700만원 감소한 바,

-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7,180억 8,300만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6,492억 5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65억 1,700만원으로 제출됨

〈표 4-77〉 최근 3년간 결산상잉여금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2 4	2 0 2 3	2 0 2 2
최 종 예 산 (A)		12,620,352	13,785,862	14,633,332
예 상 성 립 후 증 감 액 (B)		783,489	602,143	296,125
예 산 현 액 (C = A + B)		13,403,841	14,388,006	14,929,457
세 입 결 산 액 (D)		13,008,758	13,314,516	14,738,177
세 출 결 산 액 (E)		11,993,507	11,766,497	12,811,043
결 산 상 잉 여 금 (F = D - E)		1,015,250	1,548,018	1,927,134
	명 시 이 월	58,306	263,491	325,906
	사 고 이 월	659,777	519,997	276,237
	계 속 비 이 월	-	-	-
	보 조 금 반 납 예 정 액	649,205	1,322,741	3,559
	보 조 금 집 행 잔 액	649,205	1,322,741	3,559
	교 부 차 액	-	-	-
	지 방 채 상 환	-	-	-
순 세 계 잉 여 금 (G)		296,517	763,206	1,321,430

- 서울시교육청은 '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24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을 '24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내부유보금 135억 2,500만원으로 전망하고 '25년도 세입예산중 전년도 이월금으로 선(先) 편성하였으나,
 - '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전망분보다 2,829억 9,200만원이 증가된 2,965억 1,700만원으로,
 - 기편성한 135억 2,500만원(내부유보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2,829억 9,200만원을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전년도이월금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순세계잉여금의 실제 발생액이 당초 전망치보다 증가한 사유는 서울시교육청이 세입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대규모 예산절감 조치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감교부(△3,776억원)와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감전출(△375억원)에 대비하고자 「'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배정을 유보(5,773억원)한 바 있음
 - 세입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절감조치는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교육현장에 필수적인 사업의 축소 또는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바,
 - 실제 배정 유보액중 재무활동(기금전출금) 2,120억 5,300만원 이외에 시설사업비(1,224억 1,900만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절감계획의 순기능만 우선시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됨

- 배정액을 유보하는 절감계획은 단기적인 재정 안정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교육시설 투자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져 향후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여건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9) 지방채 관련

-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는 것으로, '24회계연도 중 지방채 차입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회계연도에 지방채 원금 전액(3,161억 7,600만원)과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한 이자(64억 2,000만원)를 상환한 이후 현재까지 지방채 현재액은 없으며 '25~'2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도 향후 5년간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4-78〉 2024회계연도 지방채 발행 및 상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2 3 년 도 말 현 재 액	'24회계연도 증감				' 2 4 년 도 조기상환액	' 24년도말 현 재 액
		발 행 (차 입)	상 환				
			원 금	이 자	계		
-	-	-	-	-	-	-	-

5. 재무제표 (재무회계결산)

- **재무제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결산서를 구성하는 서류로서,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①**재정상태표**, ②**재정운영표**, ③**순자산변동표** 및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임
- '24회계연도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결과 **총자산**은 18조 793억 7,400만원이며 **총부채**는 5,069억 4,3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7조 5,724억 3,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2.9%, △5,573억 6,200만원 감소한 것임
- '24회계연도 **총수익**은 11조 5,556억 7,300만원이며 **총비용**은 12조 1,130억 3,6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573억 6,200만원으로 제출된 바,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회계연도 이후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흑자 재정 운용 구조를 유지하였으나, '23회계연도부터 순자산은 감소하고 비용이 수익보다 많은 적자 재정운영 구조로 전환된 것으로 검토됨

〈표 5-1〉 재무제표(요약)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 자 산	총 부 채	순 자 산	총 수 익	총 비 용	운영차액
2024	18,079,374	506,943	17,572,430	11,555,673	12,113,036	△557,362
2023	18,678,032	548,238	18,129,793	11,242,267	11,751,208	△508,941
증 감 (증감률)	△598,658 (△3.2)	△41,295 (△7.5)	△557,362 (△3.1)	313,406 (2.8)	361,828 (3.1)	△48,421 (△9.5)

(1)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 '24회계연도의 **총자산**은 18조 793억 7,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8조 6,780억 3,200만원) 보다 △3.2%, △5,986억 5,800만원 감소함
- '24회계연도 **총부채**는 5,069억 4,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5,482억 3,800만원) 보다 △7.5%, △412억 9,500만원 감소함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24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17조 5,724억 3,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8조 1,297억 9,300만원) 보다 △3.1%, △5,573억 6,200만원이 감소함

〈표 5-2〉 재정상태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B)
자 산	18,079,374	18,678,032	△598,658	△3.2
부 채	506,943	548,238	△41,295	△7.5
순 자 산	17,572,430	18,129,793	△557,362	△3.1

① 자산

○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며

- 전체 자산의 83.8%를 차지하는 **유형자산**은 15조 1,449억 1,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1.1%, 1,631억 2,100만원 증가하였으나, 전체 자산의 15.3%를 차지하는 **유동자산**은 2조 7,703억 8,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보다 △21.5%, △7,602억 8,900만원 감소하였고,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총 △5,986억 5,800만원 감소한 18조 793억 7,400만원으로 제출됨

〈표 5-3〉 자산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2 0 2 3		증 감 액 (C=A-B)	증 감 률 (C / B)
	금 액 (A)	구 성 비	금 액 (B)	구 성 비		
합 계	18,079,374	100.0	18,678,032	100.0	△598,658	△3.2
유 동 자 산	2,770,381	15.3	3,530,670	18.9	△760,289	△21.5
투 자 자 산	162,266	0.9	163,880	0.9	△1,613	△1.0
유 형 자 산	15,144,910	83.8	14,981,789	80.2	163,121	1.1
무 형 자 산	34	0.0	2	0.0	31	1,172.7
기타비유동자산	1,781	0.0	1,689	0.0	92	5.4

○ 유형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감내용을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검토하면,

- 유형자산의 경우, 토지·건물·건설중인자산 등의 ⊕증가분(5,318억 9,600만원)과 감가상각비 및 처분액 등의 ⊖감소분(△3,687억 7,500만원)이 반영되어 직전회계연도(14조 9,817억 8,900만원) 보다 1,631억 2,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5-4〉 유형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C=A-B)	증 감 률 (C/B)
합 계		15,144,910	14,981,789	163,121	1.1
⊕ 토 지		7,564,755	7,491,616	73,139	1.0
⊕ 건 물		9,021,696	8,859,428	162,267	1.8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817,345	△3,592,714	△224,631	△6.3
⊕ 구 축 물		400,893	380,338	20,555	5.4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258,933	△248,775	△10,158	△4.1
⊕ 교 육 · 연 구 용 기 자 재		65,876	57,394	8,481	14.8
⊖ 교육연구용기재감가상각누계액		△40,826	△32,617	△8,209	△25.2
⊕ 기 계 장 치		301,879	298,261	3,617	1.2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86,504	△175,711	△10,792	△6.1
⊕ 도 서		81,971	81,917	53	0.1
⊕ 집 기 비 품		1,752,759	1,635,010	117,749	7.2
⊖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1,081,671	△969,694	△111,977	△11.5
⊕ 차 량 운 반 구		50,273	46,886	3,386	7.2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28,367	△25,514	△2,853	△11.2
⊖ 입 목		50,301	50,452	△150	△0.3
박 물 관 유 물		8	8	0	0.0
⊕ 건 설 중 인 자 산		1,268,062	1,125,418	142,644	12.7
기 타 의 유 형 자 산		83	83	0	0.0

- 유동자산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7,602억 8,900만원 감소한 2조 7,703억 8,100만원으로 제출된 것으로,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 감소 등에 따라 ①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4,473억 9,400만원 감소하고, 자금 운용을 위한 단기금융상품 예치 감소 등으로 ②단기금융상품은 4,892억 4,200만원 감소하였으며,
- ③미수채권은 서울시로부터 미수지방교육세전입금과 미수시도세전입금이 발생하여 900억 1,100만원 증가하였고, ④미수수익은 전년 대비 연평균 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수익 등 △5억 6,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5-5〉 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B)
합	계	2,770,381	3,530,670	△760,289	△21.5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1,010,699	1,458,094	△447,394	△30.7
	② 단 기 금 융 상 품	1,423,029	1,912,272	△489,242	△25.6
	③ 미 수 채 권	159,122	69,110	90,011	130.2
	미수채권대손충당금	△3,637	△5,924	2,287	38.6
	미 수 금	4,077	628	3,448	548.8
	단 기 대 여 금	3,630	9,252	△5,621	△60.8
	선 금 금	91,551	7,782	83,768	1,076.3
	선 금 비 용	349	834	△484	△58.1
	④ 미 수 수 익	32,413	32,976	△562	△1.7
	기 타 의 유 동 자 산	49,143	45,643	3,499	7.7

- 투자자산은 장기학자대여금과 퇴직금적립액의 증감에 따라 직전회계연도(1,638억 8,000만원) 보다 △16억 1,300만원이 감소한 1,622억 6,600만원으로 제출됨

〈표 5-6〉 투자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C=A-B)	증 감 률 (C/B)
합	계	162,266	163,880	△1,613	△1.0
	장 기 대 여 금	157,902	161,533	△3,630	△2.2
	장기학자대여금	157,902	161,533	△3,630	△2.2
	퇴 직 금 여 예 치 금	4,363	2,346	2,016	86.0

- 기타비유동자산은 장기임차보증금 증가 등으로 인해 직전회계연도(16억 8,900만원) 보다 9,200만원이 증가한 17억 8,100만원으로 제출됨

〈표 5-7〉 기타비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C=A-B)	증 감 률 (C/B)
합	계	1,781	1,689	92	5.4
	보 증 금	1,757	1,621	136	8.4
	전신전화가입권	1,007	1,071	△64	△6.0
	장기임차보증금	750	550	200	36.4
	세 외 장 기 현 금	24	68	△44	△64.7

② 부채

-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②장기차입부채가 전체 부채의 56.5%, 2,862억 5,000만원이고, ①유동부채는 26.4%, 1,338억 600만원, ③기타비유동부채는 17.1%, 868억 8,500만원으로 제출됨
- '24회계연도 **총부채**는 5,069억 4,300만원으로, BTL상임대로 등의 민자리스부채상환이 직전회계연도(5,482억 3,800만원) 보다 △7.5%, △412억 9,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5-8〉 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2 0 2 3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 / B)
	금 액 (A)	구 성 비	금 액 (B)	구 성 비		
합 계	506,943	100.0	548,238	100.0	△41,295	△7.5
① 유 동 부 채	133,806	26.4	115,599	21.1	18,207	15.8
② 장 기 차 입 부 채	286,250	56.5	352,890	64.4	△66,640	△18.9
③ 기 타 비 유 동 부 채	86,885	17.1	79,748	14.5	7,136	8.9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를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 **유동부채**중 ③선수금은 '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결과 담배소비세전입금 정산금이 발생하여 35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 ④유동성장기차입부채(유동성민자리스부채), ②미지급비용(소송패소비용)과 ⑤기타의유동부채(1년 미만 예치 대상 세외예수금)는 증가하였으며, ①미지급금(보조금반환예정액)은 감소한 바, 직전회계연도(1,155억 9,900만원)보다 15.7%, 182억 700만원 증가한 1,338억 600만원으로 제출된 것임

〈표 5-9〉 유동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B)
합	계	133,806	115,599	18,207	15.8
①	미 지 급 금	649	1,322	△673	△50.9
	보 조 금 반 환 미 지 급 금	649	1,322	△673	△50.9
②	미 지 급 비 용	9,800	77	9,723	12,623.6
	미 지 급 이 자 비 용	-	-	-	-
	기 타 미 지 급 비 용	9,800	77	9,723	12,623.6
③	선 수 금	8,116	5,749	2,367	41.2
	지방교육세전입금선수금	- ^{주1)}	2,699	△2,699	△100.0
	담배소비세전입금선수금	3,583	- ^{주1)}	3,583	100.0
	임 대 료 선 수 금	348	214	134	62.6
	사 용 료 선 수 금	664	240	424	176.3
	자 산 매 각 선 수 금	3,520	2,595	925	35.7
④	유 동 성 장 기 차 입 부 채	66,927	64,716	2,210	3.4
	유 동 성 민 자 리 스 부 채	66,927	64,716	2,210	3.4
⑤	기 타 의 유 동 부 채	48,313	43,733	4,579	10.5
	세 외 예 수 금	48,313	43,733	4,579	10.5

※ 주1) 채권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경우 미수채권으로 책정되며,
채권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경우 선수금(유동부채)로 책정됨

- **장기차입부채**는 2,862억 5,000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상환일정이 개시된 신규 민자리스(BTL)가 없고, 차입금과 지방채 발행이 없으며 '24회계연도 중 민자리스(BTL) 부채(666억 4,000만원)를 상환함에 따라 직전회계연도(3,528억 9,000만원) 보다 장기차입부채는 △18.9%, △666억 4,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5-10〉 장기차입부채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B)
합 계	286,250	352,890	△66,640	△18.9
민 자 리 스 부 채	286,250	352,890	△66,640	△18.9

- **기타비유동부채**는 직전회계연도 대비 8.9%, 71억 3,700만원이 증가한 868억 8,500만원으로 제출된 바, ①**퇴직급여충당부채**는 0원으로, '24회계연도말 퇴직금추계액(1,524억 2,800만원) 보다 적립금액(1,567억 9,100만원)이 43억 6,300만원 초과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발생하지 않고, 퇴직급여예치금 43억 6,300만원이 자산(투자자산)으로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1년 이후 상환하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기타비유동부채**중 소액이나 특수성이 있는 항목인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는 지난회계연도에는 797억 4,800만원이었으나, '24회계연도에는 71억 3,700만원이 증가한 868억 8,500만원으로 제출된 바,
- 관련 계획에 따라 지난 '22년 11월, 유관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23년 8월,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 토지(청담고 이전예정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유로 이관완료(등기명의인 표시변경)하여,

- 지난 '23회계연도에는 이관된 토지의 재산가액과 1회차 징수분이 총 796억 8,000만원 발생한 것이며, '24회계연도에는 이관 차액 2회차 납부분(71억 8,000만원)을 징수함에 따라 장기선수금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5-11〉 기타비유동부채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B)
합 계		86,885	79,748	7,137	8.9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152,428	128,968	23,460	18.2
	퇴직급여예치금 (-)	△152,428	△128,968	△23,460	△18.2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86,885	79,748	7,137	8.9
	장 기 선 수 금	86,861	79,680	7,181	9.0
	세 외 장 기 예 수 금	24	68	△44	△64.7

- '24회계연도의 **부채비율**은 2.9%로 직전회계연도(3.0%)와 비교하여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이 없고, 장기민자리스부채(BTL)는 계속 상환함에 따라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은 감소 추세로써 미약하나마 재무구조 개선, 즉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사료될 수도 있으나 변동폭이 유의미하지는 않은 상태로 판단됨

〈표 5-12〉 재정상태 변동 및 지방채 발행 현황(2024~2022)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순 자 산 (A)	부 채 (B)	부 채 비 율 (B/A)	전 년 대 비 증 감 른	지 방 채 발 행 액
2 0 2 4	17,572,431	506,943	2.9	△0.1	-
2 0 2 3	18,129,793	548,238	3.0	-	-
2 0 2 2	18,638,734	557,124	3.0	△0.8	-

- 더욱이 '24회계연도 **유동비율**은 직전회계연도(3,054.2%) 보다 △983.8%p 감소한 2,070.4%로 검토되는 바, 유동부채는 182억 700만원 증가하였으나, 유동자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익 등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감소로 직전회계연도보다 △7,602억 8,900만원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수입구조가 경직된 상태에서 재무적 유동마져 감소된 것은 재정운영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5-13〉 유동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C = B - A)	증 감 른 (C / B)
유 동 자 산 (A)	2,770,381	3,530,670	△760,289	△21.5
유 동 부 채 (B)	133,806	115,599	18,207	15.8
유동비율(A/B)	2,070.4	3,054.2		△983.8

③ 순자산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24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직전회계연도(18조 1,297억 9,300만원) 보다 △3.1%, △5,573억 6,200만원 감소한 17조 5,724억 3,000만원인 바,

- 직전회계연도 대비 총자산에 대한 순자산의 비율인 **순자산비율**이 직전회계연도(97.1%) 대비 0.1%p 상승(97.2%)하여 자산의 안정성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검토됨

〈표 5-14〉 순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률 (C / B)
순 자 산 (A)	17,572,430	18,129,793	△557,362	△3.1
총 자 산 (B)	18,079,374	18,678,032	△598,658	△3.2
순자산비율(A/B)	97.2	97.1		0.1

(2)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 '24회계연도 **총수익**은 11조 5,556억 7,300만원이고, **총비용**은 12조 1,130억 3,6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573억 6,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5,089억 4,100만원) 보다 △9.5%, △484억 2,1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5-15〉 재정운영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과목	2024 (A)	2023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운영차액 (A-B)	△557,362	△508,941	△48,421	△9.5
수익 (A)	11,555,673	11,242,267	313,406	2.8
비용 (B)	12,113,036	11,751,208	361,828	3.1

○ **총수익**은 11조 5,556억 7,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1조 2,422억 6,700만원) 보다 2.8%, 3,134억 600만원 증가한 것임

- 총수익의 97.4%를 차지하는 **이전수익**은 11조 2,528억 2,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0조 9,510억 2,400만원) 보다 3,017억 9,900만원 증가한 바,

〈표 5-16〉 이전수익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과목	2024		2023		증감액 (C=A-B)	증감률 (C/B)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합계	11,252,824	97.4	10,951,024	97.4	301,799	2.8
중앙정부이전수익	6,433,689	55.7	6,441,835	57.3	△8,146	△0.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4,587,905	39.7	4,277,092	38.0	310,812	7.3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203,959	1.8	218,165	1.9	△14,206	△6.5
기타이전수익	27,269	0.2	13,930	0.1	13,339	95.8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국세와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수익중 ①특별교부금수익은 직전회계연도(2,476억 4,400만원) 보다 △151억 6,900만원 감소하고, ②국고보조금수익은 직전회계연도(687억 7,800만원) 보다 △360억 7,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영유아수 감소에 따라 ③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수익도 직전회계연도(4,757억 4,900만원) 보다 △350억 7,400만원 감소하였음

〈표 5-17〉 중앙정부이전수익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 / B)
합 계		6,433,689	6,441,835	△8,146	△0.1
	보 통 교 부 금 수 익	5,551,715	5,486,911	64,804	1.2
	증 액 교 부 금 수 익	176,123	162,753	13,370	8.2
	① 특 별 교 부 금 수 익	232,475	247,644	△15,169	△6.1
	② 국 고 보 조 금 수 익	32,700	68,778	△36,078	△52.5
	③ 유 아 교 육 지 원 특별회계전입금수익	440,675	475,749	△35,074	△7.4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의 경우 서울시 법정전입금 수익 등의 증가로 ①지방 교육세전입금수익은 직전회계연도(1조 7,180억 3,000만원) 보다 1,607억 2,300만원 증가하였으나, ②담배소비세전입금수익은 직전회계연도(2,594억 7,400만원) 보다 103억 900만원 감소하였고,
- ③시도세전입금수익은 직전회계연도(1조 7,729억 2,100만원)보다 1,256억 4,000만원, ④기초자치단체전입금수익은 직전회계연도(1,569억 8,200만원)보다 235억 6,800만원 증가하였음

〈표 5-1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 / B)
합	계	4,587,905	4,277,092	310,813	7.3
①	지방교육세전입금수익	1,878,753	1,718,030	160,723	9.4
②	담배소비세전입금수익	249,165	259,474	△10,309	△4.0
③	시 도 세 전 입 금 수 익	1,898,561	1,772,921	125,640	7.1
	학교용자일반회계부담금수익	1,984	0	1,984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수익	114,044	104,425	9,619	9.2
	광역교육급여보조금수익	7,343	7,297	46	0.6
	기초교육급여보조금수익	3,147	3,138	9	0.3
	광역무상교육경비전입금수익	8,255	7,629	626	8.2
	기초무상교육경비전입금수익	8,255	7,629	626	8.2
	광역자치단체전입금수익	237,842	239,563	△1,721	△0.7
④	기초자치단체전입금수익	180,550	156,982	23,568	15.0

- 학교회계의전입금수익으로 구성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의 경우, 학교에서 비품이나 임목죽 등을 구매해서 자산으로 등록하는 자산이전수익이 직전회계연도(2,181억 6,500만원) 보다 △142억 600만원 감소하였음

〈표 5-19〉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 / B)
합	계	203,959	218,165	△14,206	△6.5
	학교회계의전입금수익	203,959	218,165	△14,206	△6.5
	자 산 이 전 수 익	203,959	218,165	△14,206	△6.5

- 또한 기타이전수익의 경우 기부채납 수입금 등의 증가로 ①기타지원금 수익은 직전회계연도(102억 4,000만원) 보다 131억 1,800만원 증가하였으며, ②기타협력사업비수익은 직전회계연도(36억 9,000만원)보다 2억 2,000만원 증가하였음

〈표 5-20〉 기타이전수익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 / B)
합	계	27,269	13,930	13,339	95.8
	기 부 금 수 익	0	0	-	-
①	기 타 지 원 금 수 익	23,358	10,240	13,118	128.1
②	기타협력사업비수익	3,910	3,690	220	6.0

- 자체수익은 총수익의 0.1%, 73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67억 2,700만원) 보다 5억 7,300만원 증가한 바, ①수수료수익은 교과목 인정도서 수입 증가로 인해 직전회계연도(2억 6,300만원) 보다 7억 6,000만원 증가하였고, 수련활동 등 급식비 수익자부담 수익 증가로 ②수익자부담수익이 직전회계연도(11억 7,300만원) 보다 7,000만원 증가하였으나, ③임대료 수익이 직전회계연도(5억 3,400만원) 보다 △1억 7,800만원 감소함

〈표 5-21〉 자체수익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 0 2 4	2 0 2 3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B)
		금액(A)	구성비		
합	계	7,300	0.1	573	8.5
	등 록 금 수 익	1	0.0	-	0.6
	수 수 료 수 익	1,023	0.0	760	288.7
	수익자부담수익	1,243	0.0	70	6.0
	임 대 료 수 익	356	0.0	△178	△33.3
	사 용 료 수 익	4,674	0.0	△79	△1.7
	기 타 자 체 수 익	-	0.0	-	-

- **기타수익**은 총수익의 2.6%, 2,955억 4,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2,845억 1,400만원) 보다 3.9%, 110억 3,300만원 증가한 바,

〈표 5-22〉 기타수익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과목		2024	2024	2023	2023	증감액 (C=A-B)	증감률 (C/B)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합계	295,548	2.6	284,514	2.5	11,033	3.9
	이자수익	85,878	0.7	110,996	1.0	△25,117	△22.6
	자산처분이익	4,465	0.0	27,678	0.2	△23,213	△83.9
	제재금수익	2,457	0.0	1,573	0.0	883	56.1
	잡수익	101,546	0.9	126,241	1.1	△24,695	△19.6
	기타의기타수익	101,200	0.9	18,024	0.2	83,175	461.5

- 변상금등 수입 증가로 **제재금수익**이 직전회계연도(15억 7,300만원)보다 8억 8,300만원 증가하였으나,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수익**이 직전회계연도(1,109억 9,600만원) 보다 △251억 1,700만원 감소하고, 토지매각대금 감소로 인해 **자산처분이익**이 직전회계연도(276억 7,800만원) 보다 △232억 1,300만원 감소하였으며,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보조금등반납금수익의 감소로 **잡수익**이 직전회계연도(1,262억 4,100만원) 보다 △246억 9,500만원 감소하였음
- 또한 **기타의기타수익**중 자산수증이익은 기부채납 수익의 증가로 직전회계연도(41억 6,400만원)보다 868억 5,600만원 증가하였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직전회계연도(135억 2,500만원)보다 △46억 4,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5-23〉 기타의기타수익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륜 (C / B)
합 계		101,200	18,024	83,176	461.5
	자 산 수 증 이 익	91,020	4,164	86,856	2085.9
	대손충당금환입	1,296	334	962	288.0
	전기오류수정이익	8,883	13,525	△4,642	△34.3

- 전기오류수정이익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당해연도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에서 관련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회계처리가 발견되어 이후 회계연도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 '21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취득시 즉시 등재하는 등 재무제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5-24〉 재정운영표 수익 세부 내용

(단위 : 백만원, %)

과목	2024		2023		증감액 (C=A-B)	증감률 (C/B)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합계	11,555,673	100.0	11,242,267	100.0	313,406	9.5
① 이 전 수 익	11,252,824	97.4	10,951,024	97.4	301,799	2.8
중앙정부이전수익	6,433,689	55.7	6,441,835	57.3	△8,146	△0.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4,587,905	39.7	4,277,092	38.0	310,812	7.3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203,959	1.8	218,165	1.9	△14,206	△6.5
기 타 이 전 수 익	27,269	0.2	13,930	0.1	13,339	95.8
② 자 체 수 익	7,300	0.1	6,727	0.1	573	8.5
등 록 금 수 익	1	0.0	1	0.0	-	0.6
수익자부담수익	1,243	0.0	1,173	0.0	70	6.0
임 대 료 수 익	356	0.0	534	0.0	△178	△33.3
사 용 료 수 익	4,674	0.0	4,754	0.0	△79	△1.7
수 수 료 수 익	1,023	0.0	263	0.0	760	288.7
기 타 자 체 수 익	-	0.0	-	0.0	-	-
③ 기 타 수 익	295,548	2.6	284,514	2.5	11,033	3.9
이 자 수 익	85,878	0.7	110,996	1.0	△25,117	△22.6
자 산 처 분 이 익	4,465	0.0	27,678	0.2	△23,213	△83.9
제 재 금 수 익	2,457	0.0	1,573	0.0	883	56.1
잡 수 익	101,546	0.9	126,241	1.1	△24,695	△19.6
기 타 의 기 타 수 익	101,200	0.9	18,024	0.2	83,175	461.5

※ '24회계연도 재무제표(재정운영표) 재구성, '24.12.31 기준

○ **총비용**은 직전회계연도(11조 7,512억 800만원) 보다 2.5%, 3,618억 2,800만원이 증가한 12조 1,130억 3,600만원으로,

- ③**교육복지**, ④**보건급식**, ⑪**인건비**, ⑫**기타현금지출비용** 등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6,716억 1,300만원 증가하고, ①**인적자원운용**, ④**보건급식**, ⑥**학교시설
여건개선**, ⑦**평생교육**, ⑧**교육행정일반** 등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3,097억 8,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되었음
- ⑪**인건비**는 총비용의 47.3%, 5조 7,258억 3,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5조 3,511억 5,300만원) 보다 7.0%, 3,746억 8,000만원 증가한 바, **공무원인건비**는 직전회계연도(4조 4,536억 6,500만원) 대비 3.3%, 1,480억 6,400만원 증가하고, **근로자인건비**는 직전회계연도(8,974억 8,800만원) 대비 25.3%, 2,266억 1,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 행정기관과 공립 교육공무직원(29개 직종) 및 사립 교육공무직원(8개 직종)의 인건비를 통합인건비로 편성하였고 처우개선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이 인상 되어 증가요인이 발생 한 것으로 사료됨
- ④**보건급식**은 총비용의 7.0%, 8,458억 7,5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720억 200만원) 보다 △21.1%, △2,261억 2,700만원 감소한 바, 보건급식중 **급식관리**는 직전회계연도(9,428억 8,500만원) 보다 14.7%, 1,381억 5,300만원 감소하였으며, **보건관리**는 직전회계연도(1,291억 1,600만원) 보다 △68.1%, △879억 7,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학교 감염병관리 등 학교보건관리 사업이 축소되었고 관련 계획에 따른 급식시설개선비 절감 등으로 인한 것으로 검토됨

- ⑫ **기타비현금지출비용**은 총비용의 8.3%, 1조 77억 6,0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인해 직전회계연도(8,413억 7,100만원) 보다 19.8%, 1,663억 8,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⑬ **교육복지**는 총비용의 7.1%, 8,600억 8,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7,651억 6,700만원) 보다 12.4%, 949억 1,300만원 증가한 바,
 -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등 신입생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집행액 감소 등으로 **학비지원**은 직전회계연도(953억 500만원) 보다 △2.5%, △23억 4,100만원 감소하였고, 원아 감소에 따른 유아학비 및 유아보육료 감소 등으로 **교육복지지원**은 직전 회계연도(5,932억 300만원) 보다 △1.7%, △102억 1,000만원 감소하였으나,
 - '24학년도 신규사업인 서울형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라 늘봄학교운영 지원 및 환경개선구축비 집행 등으로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은 직전회계연도(766억 5,700만원) 보다 140.1%, 1,074억 6,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5-25〉 재정운영표 비용 세부 내용

(단위 : 백만원, %)

과목	2024 (A)		2023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계	12,113,036	100.0	11,751,208	100.0	361,828	3.1
① 인적자원운용	65,686	0.5	66,766	0.6	△1,079	△1.6
② 교수학습활동지원	666,241	5.5	642,410	5.5	23,831	3.7
③ 교육복지	860,081	7.1	765,167	6.5	94,913	12.4
④ 보건급식	845,875	7.0	1,072,002	9.1	△226,127	△21.1
⑤ 학교재정지원관리	2,297,699	19.0	2,285,901	19.5	11,798	0.5
⑥ 학교시설여건개선	385,342	3.2	421,644	3.6	△36,302	△8.6
⑦ 평생교육	27,456	0.2	27,732	0.2	△276	△1.0
⑧ 교육행정일반	193,501	1.6	196,997	1.7	△3,495	△1.8
⑨ 기관운영	37,425	0.3	37,567	0.3	△141	△0.4
⑩ 재무활동	131	0.0	42,493	0.4	△42,361	△99.7
⑪ 인건비	5,725,833	47.3	5,351,153	45.5	374,680	7.0
⑫ 기타비현금지출비용	1,007,760	8.3	841,371	7.2	166,389	19.8

(3) 순자산변동표

- **순자산변동표**는 한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24회계연도의 **기말순자산**은 17조 5,724억 3,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8조 1,297억 9,300만원) 보다 △3.1%, △5,573억 6,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26〉 순자산변동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2 0 2 3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기 말 순 자 산	17,572,430	100.0	18,129,793	100.0	△557,362	△3.1
고 정 순 자 산						
Ⅰ. 전기이월고정순자산	14,564,181	82.9	14,288,048	78.8	276,132	1.9
Ⅱ. 고정순자산의증가	691,587	3.9	721,752	4.0	△30,164	△4.2
Ⅲ. 고정순자산의감소	464,036	2.6	445,619	2.5	18,417	4.1
Ⅳ. 차기이월고정순자산	14,791,732	84.2	14,564,181	80.3	227,550	1.6
특 정 순 자 산						
Ⅰ. 수정후전기이월특정순자산	1,849,238	10.5	1,797,644	9.9	51,594	2.9
Ⅱ. 운 영 차 액	△382,045	△2.2	158,393	0.9	△540,439	△341.2
Ⅲ. 특정순자산의증가	67,238	0.4	-	0.0	67,238	100.0
Ⅳ. 특정순자산의감소	93,422	0.5	106,799	0.6	△13,376	△12.5
Ⅴ. 차기이월특정순자산	1,441,009	8.2	1,849,238	10.2	△408,229	△22.1
일 반 순 자 산						
Ⅰ.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1,716,372	9.8	2,553,040	14.1	△836,667	△32.8
Ⅱ. 운 영 차 액	△175,317	△1.0	△667,334	△3.7	492,017	73.7
Ⅲ. 일반순자산의증가	462,608	2.6	445,619	2.5	16,989	3.8
Ⅳ. 일반순자산의감소	663,975	3.8	614,952	3.4	49,022	8.0
Ⅴ. 차기이월일반순자산	1,339,689	7.6	1,716,372	9.5	△376,683	△21.9

○ 순자산은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하는 바,

- 고정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의 84.2%, 14조 7,917억 3,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4조 5,641억 8,100만원) 보다 2,275억 5,000만원 증가함

〈표 5-27〉 고정순자산의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A - B)	주 요 내 역
I. 전가월고정순자산	14,564,181	14,288,048	276,132	
II. 고정순자산의증가	691,587	721,752	△30,164	· 토지 768억원 · 건물 1,608억원 · 구축물 243억원 · 교육연구용기자재 109억원 · 기계장치 167억원 · 도서 38억원 · 집기비품 1,840억원 · 차량운반구 53억원 · 입목 4천만원 · 건설중인자산의 순증가 1,440억원 · 만기리스부채의 순감소 644억원
III. 고정순자산의감소	464,036	445,619	18,417	· 토지 36억원 · 건물 10억원 · 구축물 12억원 · 교육연구용기자재 5억원 · 기계장치 11억원 · 도서 37억원 · 집기비품 49억원 · 차량운반구 3억원 · 입목 2억원 · 감가상각비 4,456억원 · 건설중인자산의 순감소 14억원
IV. 차가월고정순자산 (I + II - III) ①	14,791,732	14,564,181	227,550	

- '24회계연도중 고정순자산은 토지·건물 및 집기비품의 증가, 건설중인 자산의 순증가, 민자리스부채 등의 순감소 등의 사유로 6,915억 8,700만원이 증가(고정순자산의 증가)하였으나, 감각상각비 및 토지·건물 등의 감소로 인해 △4,640억 3,600만원 감소(고정순자산의 감소)한 것으로, 전기이월고정순자산에 고정순자산이 증감되어 기말순자산(차기 이월고정순자산)이 14조 7,917억 3,200만원으로 제출된 것임

- **특정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의 8.2%, 1조 4,410억 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8,492억 3,800만원) 보다 △4,082억 2,900만원 감소한 바,

〈표 5-28〉 특정순자산의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액 (A - B)	주 요 내 역
I. 수 정 후 전 기 이월특정순자산	1,849,238	1,797,644	51,594	
II. 운 영 차 액	△382,045	158,393	△540,439	
III. 특정순자산의증가	67,238	0	67,238	· 신청사 건립기금 - 건설중인자산 7억 3,300만원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유동성민자리스부채 636억 4,800만원 - 건설중인자산 28억 5,600만원
IV. 특정순자산의감소	93,422	106,799	△13,376	· 신청사 건립기금 - 건설중인자산 283억 4,500만원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유동성민자리스부채 636억 4,800만원 - 건설중인자산 14억 2,800만원
V. 차기이월특정순자산 (I + II + III - IV)	1,441,009	1,849,238	△408,229	

- 특정순자산은 전액 기금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24회계연도중 운영차액은 △3,820억 4,500만원이 감소하고, 신청사 건립기금(7억 3,300만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665억 400만원)의 건설중인자산으로 인해 672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신청사 건립기금(△283억 4,500만원)과 ②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650억 7,600만원)의 시설비 등이 집행됨에 따라 특정순자산 △934억 2,200만원이 감소하여 기말순자산(차기이월특정순자산)은 1조 4,410억 900만원으로 제출된 것임
-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일반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의 7.6%, 1조 3,396억 8,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7,163억 7,200만원) 보다 △3,766억 8,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재정여력이 감소된 것으로 해석되나, 수입구조가 이전재원으로 경직된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결과로 사료됨

〈표 5-29〉 순자산의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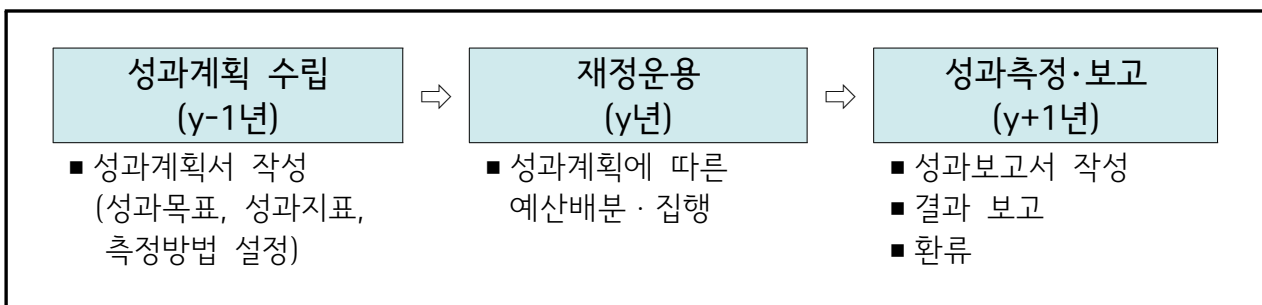
구 분	2 0 2 4 (A)	2 0 2 3 (B)	증 감 액 (A - B)	주 요 내 역
I. 수 정 후 전 기 이월일반순자산	1,716,372	2,553,040	△836,667	
II. 운 영 차 액	△175,317	△667,334	492,017	
III. 일반순자산의증가	462,608	445,619	16,989	
IV. 일반순자산의감소	663,975	614,952	49,022	
V. 차기이월일반순자산 (I + II + III - IV)	1,339,689	1,716,372	△376,683	

6.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1) 성과보고서 검토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성과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서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결산서의 구성 요소인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6-1〉 성과 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24회계연도 결산서에 포함된 성과보고서는 5개 전략목표, 25개 성과목표, 86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달성도에 관한 것으로서 성과달성률에 따른 등급별 현황을 검토하면 86개 성과지표수 중 ①9개 지표(10.5%) **초과달성**, ②69개 지표(80.2%) **달성**, ③8개 지표(9.3%) **미달성**으로 제출됨

〈표 6-2〉 성과보고서 총괄현황

(단위 : 개, %)

전략목표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과달성도			달성률 ^{주4)}
			초과달성 ^{주1)}	달성 ^{주2)}	미달성 ^{주3)}	
5	25	86 (100.0)	9 (10.5)	69 (80.2)	8 (9.3)	90.7

- ※ 주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주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주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주4) ‘초과달성률’과 ‘달성률’의 합계

○ '24회계연도 **초과달성** 및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을 검토하면, 성과지표인 ‘초·중학교 무상교과용 도서 재고율’(창의미래교육과)은 2개 회계연도 연속 초과달성하였으나, ‘직업계고 교원 연수 이수율’(진로직업교육과), ‘자립형 사립고 일반고 전환 지원 대상학교 확대’(중등교육과),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관심군 학생 전문기관 2차 연계율’(민주시민교육과)의 경우에는 2개 회계연도 연속 미달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교육부 소관 기준에 따르면 성과분석시 성과를 미달성, 초과달성한 경우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초·중학교 무상교과용 도서 재고율’(창의미래교육과)의 경우에는 무상교과용 도서 주문 및 재고 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초·중학교 전입생용 교과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초과달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전년 달성 실적보다 목표치를 하향 설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성과 보고서의 실적을 차기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목표치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등 목표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6-3〉 ‘초·중학교 무상교과용 도서 재고율’ 성과 달성도

(단위 : 건, %)

측 정 산 식	목 표 대 비	실 적 및	달 성 률
	구 분	2 0 2 4	2 0 2 3
(보 관 무 상 교 과 용 도 서 / 필 요 무 상 교 과 용 도 서) × 1 0 0 * 하향지표	목 표	1.5 이하	1.9 이하
	실 적	0.8	1.1
	달 성 률	146.7	139.4

- 성과 달성도를 미달성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전환 지원 대상학교 확대’ (중등교육과)의 경우, 미달성 원인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 관련 정책 변화로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율형 사립고 없음’과 ‘고교학점제, 수능제도 변화 등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자율형 사립고 선호도 상승 기대’로 분석하고 있으나,

- 실제로 지난 '23년 3월, 장훈고가 서울시교육청에서 10번째로 일반고로 전환하였고 '24년 7월,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여 '25년 3월, 전환하여 '24년도에는 추가적인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지난 2개년 동안 일반고 전환이 1개교에 불과하여 실적이 저조하고, 관련 규칙 개정에 따른 일반고 전환 지원금(15억원)도 삭제되어 자율형 사립고의 전환 수요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지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표 6-4〉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전환 지원 대상학교 확대’ 성과 달성도

(단위 : 건, %)

측 정 산 식	목 표 대 비	실 적 및	달 성 률
	구 분	2 0 2 4	2 0 2 3
(일반 고 전 환 자 율 형 사 립 고 / 전 체 자 율 형 사 립 고) × 1 0 0	목 표	23.0	20.0
	실 적	19.0	19.0
	달 성 률	82.8	95.2

- 성과 달성도를 미달성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전문기관 2차 연계율’(민주시민교육과)은 학생들의 우울, 자살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악화 방지를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후 후속 대책을 연계한 정도를 측정한다는 성과지표이나 '23회계연도부터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미달성 사유로 ‘학부모·학생 거부 비율 증가’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결국 수요 부족에 따라 실적을 미달성한 것일 수 밖에 없어, 향후에는 수요자인 관심군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홍보 등을 통해 실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표가 개발·적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6-5〉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전문기관 2차 연계율’ 성과 달성도

(단위 : 건, %)

측 정 산 식	목 표 대 비	실 적 및	달 성 률
	구 분	2 0 2 4	2 0 2 3
(관심군 중 전문기관 2차 검사 등 조치 학생 수 / 정서행동·특성검사결과 선별된 관심군 학생 수)×100	목 표	74.6	77.0
	실 적	73.2	72.7
	달 성 률	98.1	94.4

- ‘직업계고 교원 연수 이수율’(진로직업교육과)의 경우, 직업계고 교원 대상 신기술분야 전문가 과정 연수 등의 신산업·신기술 연수와 기초학력 연수 이수율을 측정하였으나, ‘방학 기간을 통한 장시간의 연수 과정에 학교별 학사 일정 또는 개인 사정으로 미이수자가 발생’하여 성과 달성도를 미달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 지표 측정산식이 ‘연수 이수자 수’를 ‘연수 신청 교원 수’로 나눈 결과값으로 측정되고 있어 연수 신청 교원에만 한정된 연수 이수율이라는 점에서 모집단을 ‘직업계고 교원 전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표 6-6〉 ‘직업계고 교원 연수 이수율’ 성과 달성도

(단위 : 건, %)

측 정 산 식	목 표 대 비	실 적 및	달 성 률
	구 분	2 0 2 4	2 0 2 3
(연수 이수자 수 / 연수 신청 교원수)×100	목 표	95.0	94.8
	실 적	93.7	94.6
	달 성 률	98.7	99.8

- 아울러 2개년 연속 목표와 실적이 모두 같아 달성률이 100%인 성과지표는 2개로, 관련 기준에 따른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적정한 목표치 또는 지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감사관 소관 성과지표인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등급)’은 직전 연도와 ’24년 목표등급이 3등급이었고 실적 또한 3등급을 달성한 바,
-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계획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는 청렴체감도 18개 항목과 청렴노력도 12개 항목 및 부패실태 평가 등 종합적인 청렴 지표로 구성되어, 결과중심적인 목표로 보여지나, 다수의 세부항목을 종합하여 산출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단순 1~5등급의 변동만으로 산출되는 달성률은 성과 달성의 세밀한 정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종합청렴도 평가 시 일부 등급은 별도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결과를 합산한 종합점수 등으로 지표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6-7〉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등급)’ 성과 달성도

(단위 : 건, %)

측 정 산 식	목 표 대 비	실 적 및 달 성 률	
	구 분	2 0 2 4	2 0 2 3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종 합 청 렬 도 ’ 평 가 등 급	목 표	3	3
	실 적	3	3
	달 성 률	100.0	100.0

- 중등교육과 소관 성과지표인 ‘자유학기(년)제 연수실적’은 2개년 연속 서울시교육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와 학교관리자 대상 각 1회씩 총 24회 연수를 실시함에 따라 목표를 100% 달성하였으나,

- 동 성과지표의 목표가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자유학기(년)제 운영 내실화’라는 점에서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연수 참여율이나 만족도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 연수만 실시한 횟수를 지표로 삼는 것은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지표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6-8〉 ‘자유학기(년)제 연수실적’ 성과 달성도

(단위 : 건, %)

측 정 산 식	목 표 대 비	실 적 및 달 성 률	
	구 분	2 0 2 4	2 0 2 3
$[\{ (\text{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횟수} / \text{교육(지원)청수}) \times 0.5 \} + \{ (\text{학교관리자 대상 연수 실시 횟수} / \text{교육(지원)청수}) \times 0.5 \}] \times 100$	목 표	100	100
	실 적	100	100
	달 성 률	100.0	100.0

〈표 6-9〉 초과달성 및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

부 서 명	성 과 지 표 명	
	초 과 달 성 ^{주1)} (9개)	미 달 성 ^{주2)} (8개)
감 사 관	·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이용률 제고	
총 무 과	· (신규)중요기록물 DB 구축률	· (신규)심리상담프로그램 참여도
정 책 기 획 관		·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추진율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신규)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률 · (신규)지역연계 학습일 운영교 증가율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운영율
교육협력담당관	· (신규)학부모 교육 자료 개발 건수 · 국제공동수업 참여 학교수	
창의미래교육과	· 초·중학교 무상교과용도서 재고율*	
유 아 교 육 과	· (신규)사립유치원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감소율	
중 등 교 육 과		· (신규)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참여교 만족도 ·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전환 지원 대상 학교 확대**
민주시민교육과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전문기관 2차 연계율**
진로직업교육과	· (신규)학생 1인당 진로체험 참여 횟수	· 직업계고 교원 연수 이수율**
체육건강예술교육과		· 학생건강체력 저체력학생 비율

※ 주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주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 * 지표의 경우 2회계연도(2024~2023) 이상 연속 ‘초과달성’

** 지표의 경우 2회계연도(2024~2023) 이상 연속 ‘미달성’

○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4년도와 '25년도 예산안을 심사 시 2차례에 걸쳐 '성과목표 V-3 더 맛있고, 더 건강한 학교 급식 제공'의 성과지표인 '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률'에 대해 지적한 바,

- 관련 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①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고 ②측정가능한 정량지표·결과중심적 지표를 설정하되 ③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률”은 정량적이나, 투입지표에 해당되어 성과목표의 결과가 아닌 투입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과 ‘학교급식 환경개선’이라는 단위사업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소관 부서는 지난 '23년도부터 동 성과지표를 유지하고 있어, 지표를 고수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6-10〉 ‘급식비 식품비 단가 인상률’ 성과 달성도

(단위 : 건, %)

측정산식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024	2023
$\frac{\{(\text{당해연도 식품비 단가} - \text{전년도 식품비 단가}) / \text{전년도 식품비 단가}\} \times 100}{}$	목표	4.1	3.8
	실적	4.6	4.0
	달성률	111.6	104.1

○ 서울시교육청은 '2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한 바,

- 관련 법령은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기준에는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특히, 우리 위원회는 지난 '23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관련 법령에 열거된 단서조항은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출여부에 대해 집행기관의 재량사항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부득이한 사유나 제출의 실익이 낮은 경우 등을 고려한 예외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운용될 필요가 있어 성과계획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 '24회계연도중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증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서에 수정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예산과 결산에 있어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단절시켜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저해시킨 사례일 수밖에 없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2) 성인지 결산서 검토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
 - 또한 관련 법령은 성인지 결산서를 결산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사업 개수는 총 31개 사업으로, '23회계연도의 총 38개 사업과 비교하여 △7개 사업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 '24회계연도에는 31개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해 예산현액(1,826억 2,700만원)의 76.6%, 1,398억 2,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된 바,
 - '24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집행률(76.6%)은 '23회계연도의 집행률(81.2%) 보다 낮고, 성인지 성과목표의 달성률(61.3%)도 전년도 달성률(68.4%)보다 △7.1%p 낮아진 것으로 검토되어 당초 성인지 예산으로 수립하였던 성인지 성과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는 등 성인지 예산 제도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6-11〉 성인지 결산서 총괄 현황 (2024 ~ 2023)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 업 수	예 산 현 액 (A)	지 출 액 (B)	집행률(B/A)
2 0 2 4 합 계		31개	182,627	139,826	76.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개	46,316	45,433	98.1
	성별영향평가사업 ^{주1}	5개	25,262	24,249	96.0
	교 육 부 지 정 사 업	17개	109,940	69,071	62.8
	자 체 선 정 사 업 ^{주2}	2개	1,107	1,071	96.8
2 0 2 3 합 계		38개	282,762	229,529	81.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2개	102,676	96,338	93.8
	성별영향평가사업 ^{주1}	5개	7,321	6,596	90.1
	교 육 부 지 정 사 업	17개	169,802	123,887	73.0
	자 체 선 정 사 업 ^{주2}	4개	2,961	2,706	91.4

※ 주1) 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주2) 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표 6-12〉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현황 (2024 ~ 2023)

(단위 : 개, %)

구분	사업수	성과목표수	목표달성 ^{주1)}	목표미달성 ^{주2)}	목표달성률
2024	31	31 (100.0)	19 (61.3)	12 (38.7)	61.3
2023	38	38 (100.0)	26 (68.4)	12 (41.6)	68.4

※ 주1) 성인지 성과목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주2) 성인지 성과목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

- 또한 성인지 대상사업 31개 중 27개(87.1%)가 본청소관 사업으로 본청 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에서도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기관별로 균형 잡힌 성인지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성인지 대상사업(31개) 중 자체선정사업은 2개(6.5%) 사업으로, 전년도의 사업수(4개)보다 감소된 바, 양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별 특성에 맞게 자체선정사업의 수와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6-13〉 기관(부서)별 성인지 사업수

(단위 : 개)

기 관 명		사업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매년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시도교육청이 자체 선정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합 계		7	5	17	2
본 청		7	5	13	2
직속기관	교육연수원	0	0	2	0
	학생교육원	0	0	1	0
	유아교육진흥원	0	0	1	0

- '24회계연도에는 단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성인지 예산서상 사업금액, 조직별 성인지 예산사업 내역 등에 대한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련 법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인지 예산서를 수정·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르면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과 성과 목표 달성현황, 성평등 효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별 예산현액의 변경시 성인지 예산서의 수정도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성인지 결산서는 교육부에서 시행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동 기준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서에 맞는 별도 서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작성 요령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기준처럼 명시적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방법이 없어 교육부에 보완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 「지방재정법」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자원 배분계획,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24년도 예산안과 함께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의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와 5개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바,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변동된 재정규모를 반영한 「2024~2028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예산과 중기 재정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한 것으로 사료됨

〈표 6-14〉 '24~'28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 재정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증가율
			2024	2025	2026	2027	2028	
변경	계	73,611,071	14,763,011	14,488,811	14,424,251	14,903,653	15,031,345	0.5
	교특회계	66,411,008	12,636,017	12,769,606	13,282,513	13,697,483	14,025,389	2.6
	기금	7,200,063	2,126,994	1,719,205	1,141,738	1,206,170	1,005,956	△17.1
기정	계	73,111,280	14,340,907	14,460,171	14,408,036	14,887,614	15,014,552	1.2
	교특회계	66,044,404	12,269,413	12,769,606	13,282,513	13,697,483	14,025,389	3.4
	기금	7,066,876	2,071,494	1,690,565	1,125,523	1,190,131	989,163	△16.9

※ 기금수입 = 당해연도 기금전입금 + 전년도 예치금회수 + 이자수입

- 또한, 「2024~20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에 중기 국고보조금 사업 내역과 중기 재량지출 전망 등의 금액과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나,

-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개요와 학생·학교·학급·교직원 수 변동 추이 등 서울교육재정 제반 여건은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교육재정 관련 변동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20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과 변경계획을 검토하면,

- 관련 지침에 따르면 ‘주민, 지방의회, 관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24~’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과 변경계획에는 의견수렴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①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 결과 등 다양한 예산 수요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과 ②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사항 등을 5개년 연동계획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승인(2025. 6.26)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2872
----------	------

제출연월일 : 2025년 5월 2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원)

예 산 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세계잉여금 (C)=(A)-(B)
12,620,352,251,000	13,403,841,499,620	13,008,758,307,920	11,993,507,604,550	1,015,250,703,370

나. 결산상 잉여금 현황

(단위 : 원)

세계잉여금 (A)	다음연도 이월액(B)				보조금 반납예정액 (C)	지방채 상환 (D)	순세계 잉여금 (E)=(A)-(B)-(C)-(D)
	소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1,015,250,703,370	718,083,996,788	58,306,161,330	659,777,835,458	0	649,205,100	0	296,517,501,482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